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1. 9 (수요일), 14:00 ~ 19:5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락, 김권구, 김왕직, 류제헌, 성종상,
심정보, 이재범, 한필원(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124호 덕수궁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공 개)
4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5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면 전시용 임시 LED 패널 설치	(공 개)
6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주변 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개축	(공 개)
7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교회본부 신축	(공 개)
8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진입로 개선	(공 개)
9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0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주변 변전소 신축 및 변전설비 설치	(공 개)
11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 테이) 신축	(공 개)
1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선덕여왕 화백회의 조형물 설치	(공 개)
13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전선 지중화 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4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공 개)
16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 정비	(공 개)
17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구석기 겨울여행 행사 개최	(공 개)
18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9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및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0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사적 제223호 연천 송의전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2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3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4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5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6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 개)
27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	(공 개)
28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경사로 설치	(공 개)
29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농업용 관정 개발	(공 개)
30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1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2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3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4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5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36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7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내 가설 건축물 설치	(공 개)
38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신축	(공 개)
39	사적 제163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배반네거리 국도7호선 (포항방향) 우회차로 확장공사	(공 개)
40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	(공 개)
41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사항 변경허가)	(공 개)
42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검토사항】		
43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4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5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관련 사항 검토	(공 개)
46	사적 제117호 경복궁 동측 외곽 출입문 설치 계획 검토	(공 개)
【보고사항】		

4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안) 보고	(공 개)
48	사적 제117호 경복궁 동십자각 주변 정비공사 보고	(공 개)
49	사적 제122호 창덕궁 수강재 구들 보수 보고	(공 개)
50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주차장 진입로 정비 보고	(공 개)
51	사적 제207호 남양주 흥릉과 유릉 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 정비 보고	(공 개)
52	사적 제206호 화성 율릉과 건릉 내 율릉 화장실 정비 보고	(공 개)
5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2-001

1.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의 내사산 일부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 청운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16.9.7)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16.9.23.(문화재청 공고 제2016-277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지정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 240필지 26,557.15㎡
 - 문화재보호구역 : 2,140필지 579,199.47㎡
 - 추가지정 신청면적(문화재보호구역) 총 13필지 33,460.96㎡
 - 인왕산 곡성 구간 : 4필지 6,144.17㎡
 - 인왕산 정상 구간 : 4필지 14,492.29㎡
 - 백악산 정상 구간 : 2필지 4,348.08㎡
 - 백악산 곡성 구간 : 3필지 5,584.33㎡
 - 청운대 구간 : 2필지 2,892.09㎡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 240필지 26,557.15m²
 - 문화재보호구역 : 2,153필지 612,660.43m²

(4) 신청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사산 일부 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은 자연지형을 활용한 한양도성의 축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구간으로 보존될 가치가 충분함. 이에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6.7.8)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동 구간을 아래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16.08.18, 08.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참조
- (2)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 일 시 : 2016.7.8
 - 회의결과 : 원안동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한양도성(서울 漢陽都城)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 8. 18(목), 25(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자연지형을 활용한 도성 축조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양도성 내사산 일부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
 - 검토의견 : 서울 한양도성의 내사산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 한양도성(서울 漢陽都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백악지역과 인왕지역은 산지지역으로 성벽과 성곽시설(곡성, 성랑, 순심로)로 성문과 문루(북쪽의 대문인 숙정문, 북서쪽의 소문인 창의문), 각자성석을 포함하고 있다.
- 성벽은 태조대 조축된 이래로 세종 및 숙종대 대대적인 수축이 있었으며, 이후 영조대, 정조대, 순조대, 고종대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수축이 이루어졌다.
- 각자성석은 성돌에 새겨진 현장기록으로 성벽의 구간별로 축성에 참여한 관리자, 축성시기, 참여인력, 동원지역 등을 새겨놓았다. 각자성석은 국가의 기록물과도 일치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한양도성은 조선 왕도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수도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도시 규모의 성곽유산이다. 한성부-경성부-서울특별시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6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한양도성은 좁게는 도시를 둘러싼 성곽과 성문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그 안의 공간까지 아우른다.
- 평균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한국 고유의 축성기법과 지단 장인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역사 문화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이다.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두었으며 이 밖에도 2개의 수문, 5개의 치, 2군데의 곡성, 봉수대 등의 시설이 있다.
- 1396년(태조 5), 백악(북안산)-낙산(낙타)-남산(목멱)-인왕산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선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축과 보수를 거듭하면서 511년 동안 그 원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성벽과 성문이 훼손되고,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과 서울의 지속적인 팽창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그러나 한양도성 복원사업은 1975년 삼청지구를 시작으로 총 8개 지구(삼청, 성북,

광희, 남산, 청운1, 청운2, 삼선, 동승) 로 구역을 나누어 한양도성 전 지역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4년까지 약 70%가 보수, 복원되었다.

- 백악 곡성과 인왕 곡성은 지형여건에 맞춰 치성을 길게 늘인 형태로 보이는 방어상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한양도성 전 구간 중 곡성은 인왕 서측과 백악 동측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 또한 서쪽 인왕지역에는 화강암과 계속으로 이뤄진 자연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인왕 아래 수성동계곡이 복원되면서 정선의 그림처럼 계속을 따라 인왕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회복되었다.
- 백악의 남사면인 도성 내의 북측지역은 성곽 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궁궐, 관청, 고급주택지가 형성되었고 남산의 북사면은 그 반대의 이유로 서민주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지점은 도시의 중심으로서 상업기능이 들어서면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 한양도성은 1394년 태조의 한양 천도 후 국도(國都) 방어를 위해 1396년(태조5) 초축된 ‘도성’으로 세종과 숙종, 순조 때 개축된 후 오늘날까지 조선시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곽 축조기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 현존하는 유사유적 중 세계적으로 최장기간(514년 :1396~1910) 도성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풍수사상에 기반 해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곽 안쪽에 판축층이 조성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독창적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특별한 역사도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한양도성은 지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성벽과 대지를 일체화 시킨 구조물로서, 산지와 구릉지와 평지에 걸쳐 축성된 조선의 수도 성곽이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축조된 장소별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북악산 정상·곡성 구간, 인왕산 정상·곡성 구간, 청운대 구간은 암반과 성벽 자체가 일체화된 구간으로서, 한양도성의 일반적인 보호구역 설정기준보다 더 넓게 지정하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상의 등재구역과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전체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4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5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578.16		
6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7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8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9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10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13,568.64		
11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12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13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계		13필지		2,944,357	33,460.96	총 15필지 중 두 필지(종로구 삼청동 산2-27,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중복	

1) 인왕산 곡성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4,244.33		
2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3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4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계		4필지		770,130	6,144.17		

2) 인왕산 정상 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2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3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4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9,324.31		
계		4필지		904,553	14,492.29		

3) 백악산 정상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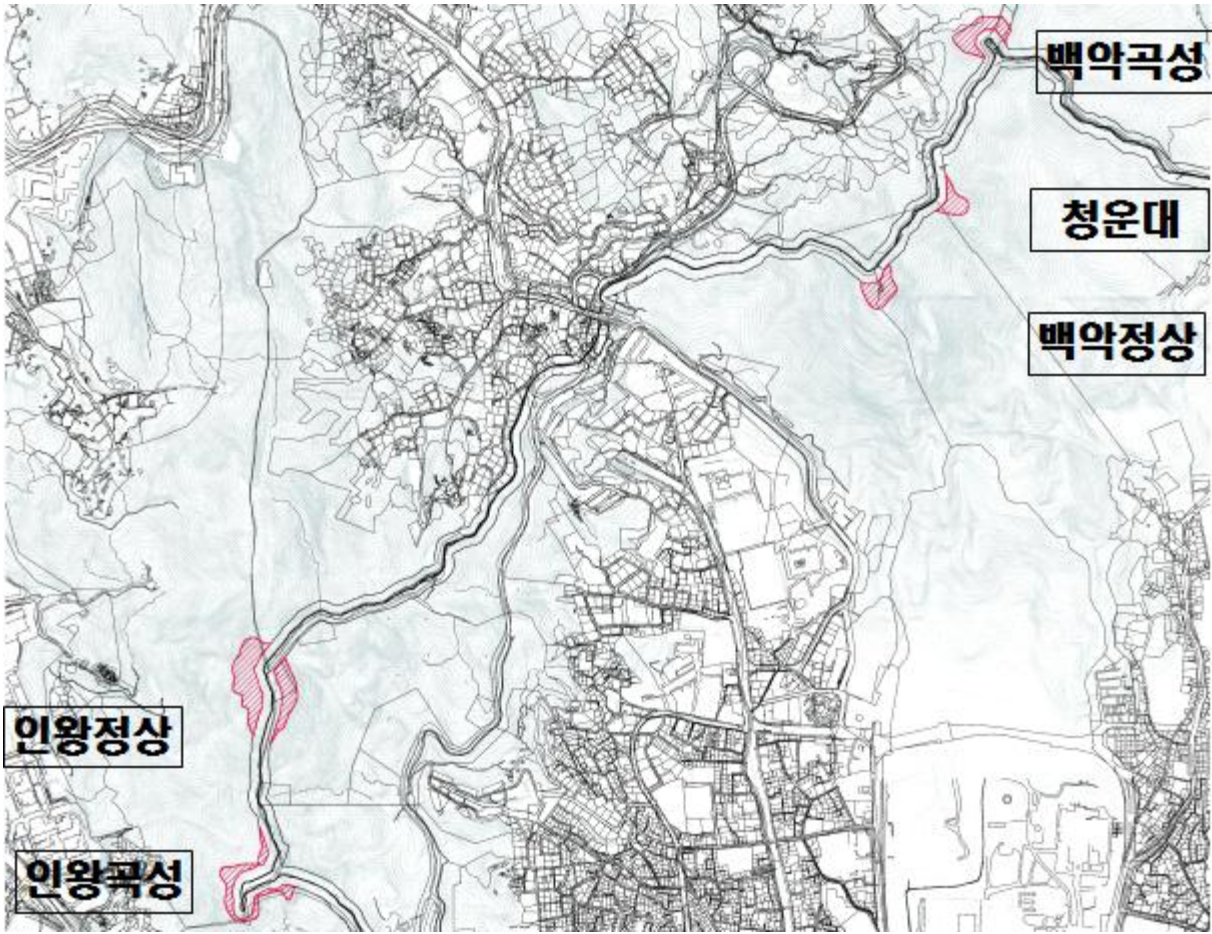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431.48		
2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계		2필지		473,743	4,348.08		

4) 청운대 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2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146.68		
계		2필지		891,776	2,892.09		

5) 백악산 곡성 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계		3필지		740,678	5,584.33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범위



인왕산 곡성 구간



인왕산 정상 구간



백악산 정상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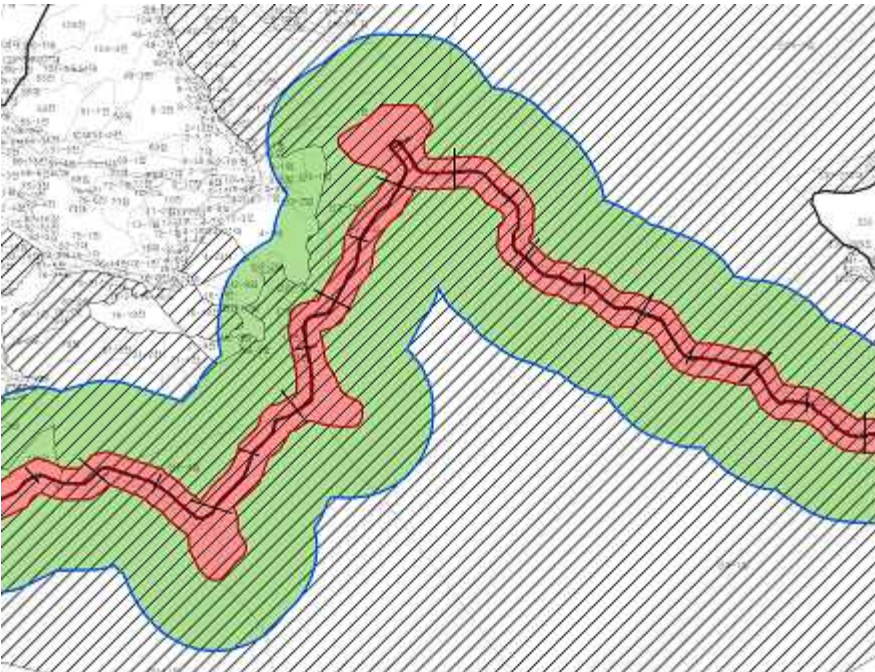
청운대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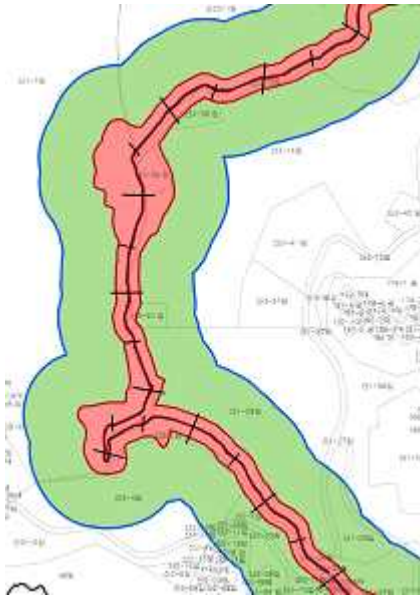
백악산 곡성 구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일부 보호구역이 증가하나 주변은 산림으로 연접구역의 허용기준을 차용하더라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됨.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백악산 정상 및 곡성, 청운대 구간



범례	
[Red hatched box]	현상변경허용기준안
[Red box]	유산구역
[Green box]	1구역 (공원 및 녹지지역)
[Yellow box]	2-A구역 (성곽 기저부이하 평지)
[Orange box]	2-B구역 (성곽 기저부 1.5m이하 평지)
[Light Orange box]	2-C구역 (성곽 도로 4m이하 평지 또는 1층)
[Pink box]	2-D구역 (최고높이 4m이하)
[Purple box]	2-E구역 (최고높이 8m이하_2층이하)
[Light Blue box]	3구역 (최고높이 12m이하_3층이하)
[Blue box]	4구역 (최고높이 16m이하_4층이하)
[Brown box]	5구역 (관림법)
[Grey box]	6구역 (인간 및 공공 대규모 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인왕산 정상 및 곡성 구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관리 현황

한양도성은 조축(태조 5년) 이래로 세종, 숙종대의 대규모 수축공사를 거쳐 영조, 정조, 순조,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벽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관리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성벽의 훼손을 시작으로 근대화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성벽의 보존이 위협¹⁾받았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옛 한양도성의 모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성곽 복원사업은 창의문 일대의 보수공사(1961)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훼손된 성벽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원형보존과 고고학적 발굴이 병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양도성 현황조사 및 보존·관리·활용계획의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울城郭(1976)’ 보고서 : 본격적인 성곽복원사업과 함께 성곽의 보존실태를 정리
- ②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 한양도성의 유산 및 주변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성벽의 훼손·매장·멸실 구간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계획과 관련 사업을 제시
- ③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2012):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제시,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 ④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13)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원칙을 바

1) 1920 중반 이후 남산 회현자락, 동대문운동장(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성곽을 비롯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성곽구간이 훼손됨으로써 한양도성의 보존이 위협받게 되었다.

탕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 ⑤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2013) : 한양도성 인접지역의 주거지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나. 정비 및 활용계획(안)

1) 보존관리의 방향

- ① 한양도성 전구간(18.627km)을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적의 상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한다.
- ② 현재의 법제도적 관리가 한양도성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 ③ 국가지정문화재로 미지정된 공공부지 또는 사유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개방 및 매입을 추진한다.
- ④ 한양도성의 현황을 유형별로 원형구간, 복구 및 복원구간, 매장구간, 발굴유구구간, 유구이전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특성을 관리한다.



2) 유형별 보존관리 원칙

- ① 원형구간은 성벽원형과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면화 및 역사적 사료 수집 등을 실시한다. 구조적으로 위험 구간은 원형의 보호유지를 위해 보강조치를 하고 계층관리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② 복구(Restoration) 및 복원(Reconstruction)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실시하되 고증이 미흡한 상태로 복원된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전진단을 통해 해체 또는 재복구를 검토한다.
- ③ 매장구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되고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 ④ 발굴 유구구간은 유구를 현장에서 보존강화처리하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만 복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형이 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원을 검토한다.
- ⑤ 유구 이전구간에 대해서는 유구의 원위치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본래 위치에 이전하도록 한다.
- ⑥ 유산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철거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한양도성의 성곽과 내측 판축층을 훼손하고 있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 철거한다.
 - 한양도성의 역사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은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전시하거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한양도성 중장기 보존관리 계획

1)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의 방향

한양도성의 수평투영 길이는 18.627km이며 이중 약12.4km가 사적 제 10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약 608m(월암구간, 남산 회현구간, 이간수문구간)의 유적이 발굴되어 354m가 복원된 상태이다. 이들 발굴 유적은 태조대로부터 세종, 숙종, 순조대에 이르는 성벽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한양도성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발굴유적 구간, 그리고 잠재적으로 지하에 유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멸실·훼손 구간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장기 보존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과 세계유산 제도의 기준을 고려한 관리구역의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훼손 및 멸실 구간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도시건축법제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지하에 유구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발굴을 시행하고 유적이 발견되면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2) 세부 보존관리계획

- ① 문화재 보호법과 세계유산 제도의 기준을 고려한 관리구역의 설정과 지침 마련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 (현재 수립중)
 - 세계유산 제도를 고려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보호관리계획 마련(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보호관리계획 마련 중)
- ② 도시건축 법제를 활용한 보존관리
 - 훼손·멸실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 정동지구단위계획, 명륜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중
 - 한양도성 내부의 관리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을 활용
 - 사적 미지정 구간에 대한 유적과 주변 경관관리는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을 활용 (경관법)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도시정비법)을 활용
- ③ 사적 지정구간의 확대
 - 사적 미지정구간 중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유형화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후 사적 지정 확대 추진(1단계: 복원 완료 후 사적 미지정 구간, 2단계: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소유 구간, 3단계: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민간점유 구간)
 - 지하유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시행
 - 유구 발견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

9. 종합 의견

- 서울 한양도성은 1394년 태조의 한양 천도 후 국도(國都) 방어를 위해 1396년(태조5) 초축된 ‘도성’으로 세종과 숙종, 순조 때 개축된 후 오늘날까지 조선시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곽 축조기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 현존하는 유사유적 중 세계적으로 최장기간(514년 :1396~1910) 도성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풍수사상에 기반해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곽 안쪽에 판축층이 조성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독창적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특별한 역사도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한양도성은 지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성벽과 대지를 일체화 시킨 구조물로서, 산지와 구릉지와 평지에 걸쳐 축성된 조선의 수도 성곽이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축조된 장소별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금회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북악산 정상·꼭성 구간, 인왕산 정상·꼭성 구간, 청운대 구간은 암반과 성벽 자체가 일체화된 구간으로서,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 위원회 사적분과('16.09.07) 검토 및 지정예고('16.09.26~10.28.)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m²
- (4) 신청사유
 - 신청부지는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및 향후 언양읍성의 활용·관리에 유용할 것임.

라. 지정조사보고서(울주 언양읍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조사보고)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현지)일자 : 2016.09.01(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울주언양읍성 내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울주 언양읍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현황

- 언양읍성의 입지는 다른 대부분의 읍성처럼 진산과 수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의 고현산을 진산으로 하고 남쪽의 남천(태화강 상류)을 수계로 하고 있다.
- 성곽의 보존상태를 보면, 동문과 남문 사이의 동측 부분과 서남측 부분이 많이 유실되었으나, 일부에는 기단석과 성곽이 양호하게 남아 있어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남측의 성벽은 주택에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상부는 많이 무너져 내려 있지만 여장을 제외한 문지, 옹성지, 치성, 체성 등 성의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잔존해 있다.
- 성내부에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관아 등)은 없지만, 『언양읍지(1919)』 공해(公廨)조를 참조하면, 건물 상호간의 관계는 알아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의 추정 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 현재의 보존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해방이후 남문지를 중심으로 체성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민가가 조성되면서 파괴가 가속화되었으나,
 - 해자부분은 침수로 인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미나리 밭 등으로 경작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비교적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1990년 5월 24일 민가가 분포하지 않는 북쪽 체성부분과 동쪽 체성부 동문지 북쪽 지점, 서쪽 서문지 북쪽 체성부분만 문화재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나머지는 지정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 언양읍성 내·외부가 급격히 훼손되면서 문화재도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 울산광역시에서는 훼손된 문화재의 정비·보수 방안 강구를 위해 2002년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팀과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언양읍성의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여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 2011년 8월 19일 언양읍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언양읍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과 우리군의 적극적 의지로 나머지 성곽부분과 남문지 복원에 필요한 부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사적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여 언양읍성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등 추진중이며
- 2013년 8월에는 읍성 남문지 영화루를 복원 준공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구.언양초등학교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 고려시대 공양왕 2년(1,390년)에 토성으로 처음 축조하였다가 110년 이후인 조선조 연산군 6년(1500년) 당시 현감이었던 이담룡이 현재의 석성으로 축조하고 광해군 9년(1617년) 개축 및 개수되었음.

○ 유래

- 신라시대 경덕왕 이전의 거지화현은 현재의 언양읍성에서 동북방 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토성이 있었는데 둘레는 3,208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지금의 읍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현치소(군 주둔지)를 옮기면서 명칭도 현양으로 고쳤으며, 이후 고려 인종(1123년~1146년) 때에는 언양으로 고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재 위치의 읍성이 축조된 것은 고려시대 공양왕 2년(1,390년)으로 처음에는 토성을 축조하였는데 둘레가 1,417척, 높이가 8척이며 군창이 있었고 연못 4곳과 우물 2곳이 있었으며,
- 조선시대 연산군 6년(1,500년)에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으면서 그 규모가 3,064척으로 확장되었음을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성 내부 연못에 대한 기록은 1,469년 간행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만 나타날 뿐 다른 지리지에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으나 시문에 간간히 표현된 내용에 의하면 성내의 연못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언양읍성은 화장산의 동남쪽 기슭 아래에 형성된 충적대지 위에 평면 정방형 구조를 갖춘 조선시대의 읍성이다.
- 특히, 평면 구조가 완전한 정방형에 가깝고 4방의 중앙에는 용성을 두른 문지를 갖추고 그 좌우 뿐아니라 성우(城隅)에 방대형의 각치(角雉)를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해자와 목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전형이 되는 읍성이다.
- 또한, 《언양읍지기록》의 내용 중에는 고을의 규모에 비하여 성이 견고하고 누각

이 웅장하다고 표현되고 있으며, 시문 중에는 성내의 연못을 노래하면서 연꽃이 핀 연못과 돛대, 작은 정자와 같은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당시 언양읍성은 큰 고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웅대한 누각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조경까지 어우러졌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언양읍성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1966년 12월 27일에 잔존 성벽을 중심으로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 이후 1990년에 주민의 민원과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남성벽과 동문과 서문의 남측 지역 14,913㎡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고시로 지정구역은 46,010㎡에서 40,989㎡(134필지)로 축소되었다.
- 이후,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읍성의 복원과 보존을 위하여 2011년 8월 19일 해제되었던 남측부분의 성벽과 성벽 외벽에 접한 면적 26,997㎡(132필지)을 추가 사적지정하여 266필지, 67,986㎡로 조정하였으며, 북문지 및 일대에 대한 발굴 작업과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읍성의 남문 전면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언양읍성 남문(영화루)’을 복원하였다.
- 또한, 2014년 11월 19일에는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부지인 구.언양초등학교 일대(14필지, 16,507㎡)가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되어 향후 관아부지의 정확한 발굴조사와 심도있는 학술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금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분(9필지, 5,270㎡)은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읍성의 사례를 보면 읍성은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역사적 유물이면서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축제를 통해 특성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 잔디마당은 언양읍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 현재까지 복원 정비된 우리나라 읍성의 대부분이 호남(낙안읍성, 나주읍성)과 충청(해미읍성)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언양읍성을 완벽하게 복원 정비할 경우 조선시대의 영남, 호남, 충청도 읍성의 규모나 축조방법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적인 가치뿐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언양읍성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서 읍성 전체가 문화재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신청된 최소한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 향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읍성 전체가 문화재로서의 가

치가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언양읍성이 완벽하게 복원정비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근거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579(2016.8.8.)호 및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문화재보호구역)9필지 5,270㎡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소유주 동의여부)
						성명	주소	
	계	9필지		5,270	5,270			
1	동부리	239-1	답	1,534	1,534			동의
2	동부리	239-2	답	258	258			동의
3	동부리	239-3	답	1,570	1,570			동의
4	동부리	240-5	대	331	331			동의
5	동부리	240-6	대	331	331			동의
6	동부리	240-8	답	136	136			동의
7	동부리	240-9	답	175	175			미동의
8	동부리	240-10	대	126	126			동의
9	동부리	240-11	답	809	809			동의



추가지정 신청부지 현장사진



추가지정 신청부지 현장사진

언양읍성 고지도

각읍지도(1703~1750)



- 4개의 성문이 문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
- 남문과 북문은 홍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문과 서문은 개거식의 누문 형식을 보이고 있음
- 지붕의 형태는 4개의 성문 모두 팔작지붕에 하부 기둥을 취함
- 여장의 모습은 표현되지 않고 있으며 웅성의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음

해동지도(1724~1776)



- 4개의 성문이 나타나며 남문의 모습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
- 북문, 동문, 서문의 경우 지붕이 체성의 상부에 위치하고 남문은 체성의 상면높이에 마루판이 위치
- 지붕의 형태는 남문만이 팔작지붕의 형태이며 나머지는 맞배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지도(숙종~영조)



- 남문만 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문은 개거식의 루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남문의 기둥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기둥대신 성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지붕은 모두 팔작지붕의 형태이며 체성에서 여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언양지도(언양군읍지, 1899년)



- 모든 문이 문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고문헌 기록상의 문의 이름과 일치함
- 북문의 경우 기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마루가 체성 위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지붕의 모습은 모두 팔작지붕이며 전 구간에서 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음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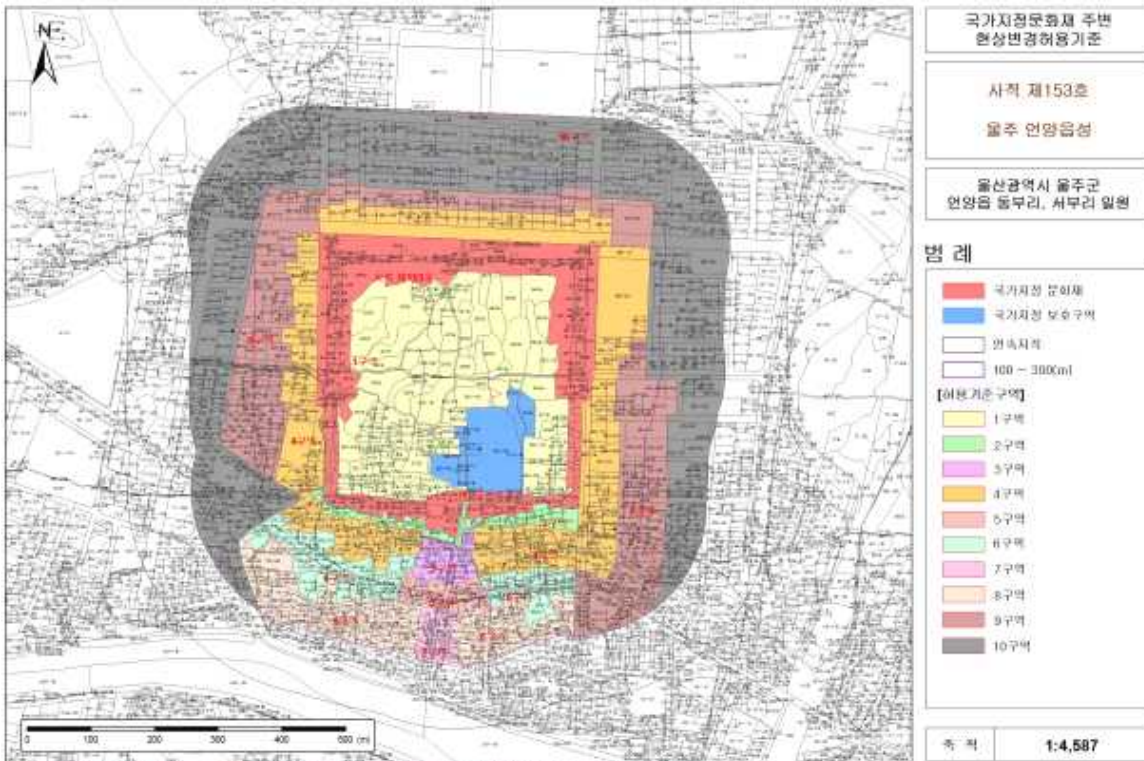


지적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현재 1구역 내부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의 변화가 없어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준보통 용역과에 검토요인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 정비 · 활용 계획

□ 보수정비 현황

- 성곽복원 185m(동·북쪽 성곽)
 - 1996년 : 성곽길이 59.5m
 - 1997년 : 성곽길이 50.5m
 - 1998년 : 성곽길이 20.0m
 - 1999년 : 성곽길이 55.5m
 - 2000년 10월 : 이후 축성기법 논란으로 성곽복원 중단
- 2009. 12. 10. :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착수('10. 4. 18 완료)
- 2010. 8. 24. : 남문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소도읍육성사업)
- 2010. 12. 7. : 북문지 주변 성곽정비공사('11. 12. 15 완료)
 - 사업내용 : 성벽 붕괴우려구간 해체, 재설치(L=42.5m),
성벽 상부 및 내측 성토부분 잔디식재(A=1,029.96㎡)
- 2012. 3. 28. :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1. 9. 1 ~ '12. 3. 28 / 한국전통문화학교 >
- 2010. 2. ~ 2013. 2. : 남문 영화루 복원 정비(소도읍육성사업)
 - 사업내용 : 남문복원(옹성 L=42m, 체성 L=52m, 문루건립 A=78.93㎡),
광장조성(잔디식재 A=1,990㎡, 문화재 안내판 2개소)
- 2013년 6월 :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사업 추가('14. 12월 완료)
 - 사업내용 : 성벽복원 연장 L=68m(동측 L=40m, 서측 L=28m)

□ 향후계획 및 보존방안

- 2012년 작성된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계별 사업 계획인 성곽 정비와 연계하여 다목적 잔디마당(남쪽 공지) 부지는 남동측의 구. 언양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남동측 성우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의 결절점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다. 현재 언양읍성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 추후 언양읍성 정비시 조성될 성내시설지로 진입하는 주요한 길이 될 것이며, 현재도 넓은 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지적원도(일제강점기, 1912년경)상에도 대상지의 특별한 이용이 발견되지 않아 주요 결절점으로서 편의공간 조성의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된다.
- 대상지 내부는 다목적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여, 주요한 행사시에는 행사의 장소로 활용하되 평상시에는 주민 및 읍성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성내 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경계 구분을 위해 성내시설 인접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한다.
- 주차장은 임시적으로 성내에 설치하되 추후 성외지역으로 이동시켜 설치하도록

하며, 파고라, 벤치, 평상 등을 설치하여 마을사람들이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종합 의견

- 금회 울주 언양읍성 내의 동남측 구역은 2014년 11월 19일에는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부지인 구.언양초등학교 일대(14필지, 16,507㎡)의 연접구역으로서, 추가 지정 예정지는 고지도 상에서도 관아와 연접 건물군이 분포가 예상되는 곳임. 또한 체성부와 연접하여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덕수궁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의 사적 및 문화재보호 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덕수궁 선원전 영역(선원전·홍덕전·홍복전 권역)은 2011년 「부지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합의서」에 따라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관됨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면적과 일부 누락된 필지를 사적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 2016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16.9.7)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16.9.22.(문화재청 공고 제2016-276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지정신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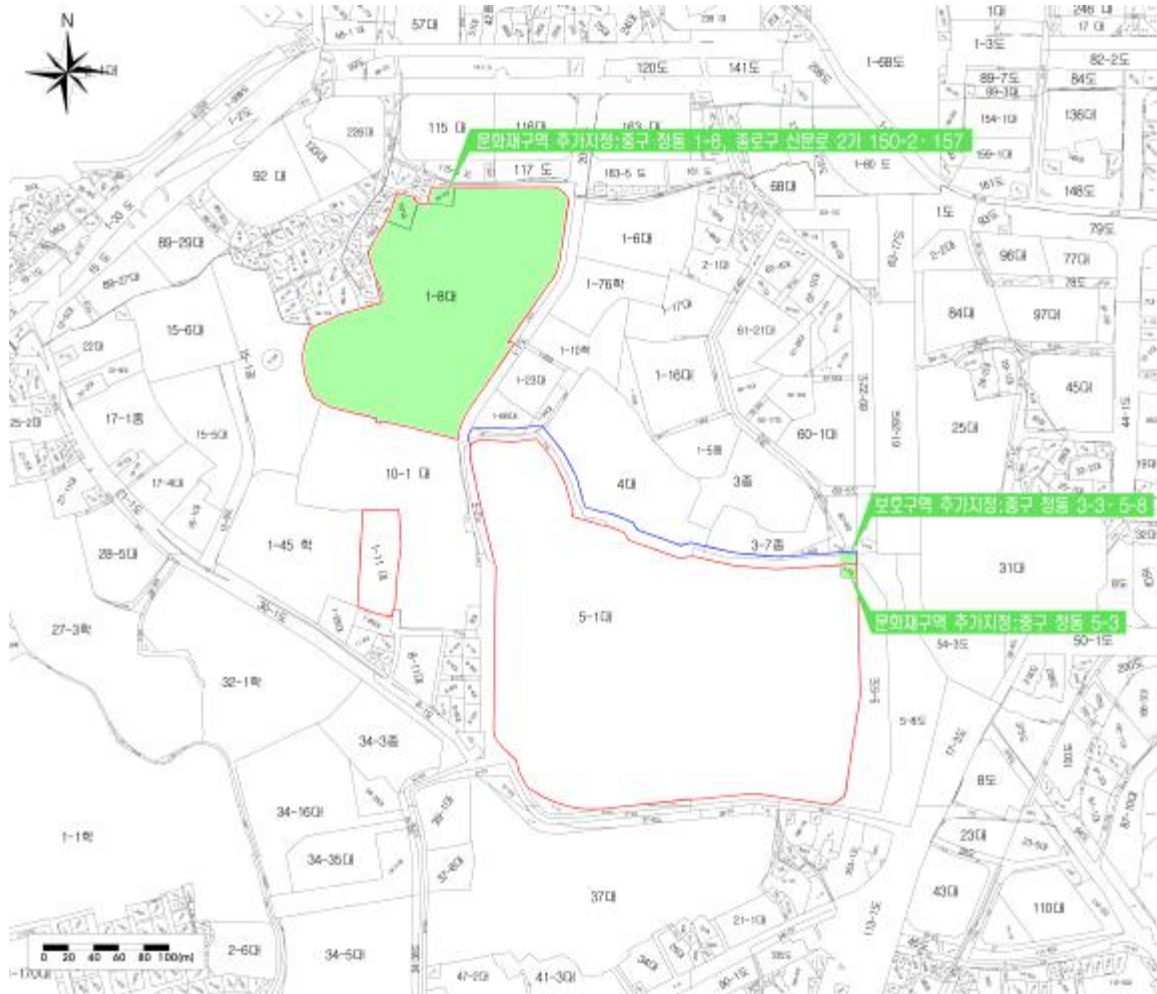
구 분	기존 지정 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2필지 63,609.6㎡	5필지 26,660.5㎡	6필지 90,270.1㎡	추가지정 1필지는 기존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10필지 3,439.0㎡	2필지 134.0㎡	10필지 3,573.0㎡	추가지정 2필지는 기존 지정

(4) 지정사유

- 덕수궁 선원전 영역이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관됨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정동 1-8, 신문로2가 150-2, 157)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면적 변경(정동 1-11)과 일부 누락된 필지(정동 5-3, 5-8, 3-3)를 사적 및 보호 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라. 참고자료

○ 사적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 덕수궁 추가지정 관련 참고사항

- '07.02.07.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중명전)
 - 서울시 중구 정동 1-11, 1필지 2,403.6㎡
- '08.12.10.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지정구역 2필지 63,609㎡, 보호구역 10필지 3,439㎡
- '11.04.14. '부지교환 합의서' 한·미 정부간 서명
 - 미국 소유 3필지 26,477.7㎡ 한국정부로 이관
- '15.12.08.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 시행(선원전 영역 포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덕수궁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중구 정동	1-8	대	25,746.8	25,746.8		
2	중구 신문로2가	150-2	대	272.2	272.2		
3	중구 신문로2가	157	대	458.7	458.7		
4	중구 정동	5-3	대	136.5	136.5		
5	중구 정동	1-11	대	2,449.9	46.3		
계		5필지			26,660.5		

○ 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중구 정동	5-8	도	7,858.0	107.0		
2	중구 정동	3-3	대	310.0	27.0		
계		2필지		8,168.0	134.0		

4. 덕수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인근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문화재구역 추가지적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하는 덕수궁 선원전지(선원전·홍덕전·홍복전 권역)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예정)에 따라 확장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임
- * 추가지정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8 번지, 종로구 신문로 2가 150-2 및 157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덕수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2016.9.21.~2016.10.10.)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 허용기준 조정(안)

현행(2010.12.31)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소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현행(2010.12.31)			조정(안)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3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덕수궁의 선원전터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주변 100m내 역사문화 환경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변은 이미 초도시화된 구역으로 연접 20m구간에 대하여만 개별심의에 의해 검토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2)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검토('16.09.07/원안가결)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면 전시용 임시 LED 패널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면 계단 좌우측으로 전시용 임시 LED 패널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면 계단부 좌우측에 전시용 임시 LED 패널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입구에 LED 패널 설치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 처리('16.10.31) 하였으나 LED 패널의 위치를 미술관 입구에서 전면 계단부 좌우측(미술관 외부)으로 변경요청하여 심의에 부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전시용 임시 LED 패널 설치>
 - 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9 덕수궁 내
 - 사업내용
 - 내용 : 유영국 탄생 100주년전 관련 유영국 작품 영상 구현을 위한 LED 패널 설치
 - 크기/위치 : 4m×5m, 2개 / 전면 계단 좌우측
 - 설치기간 : 2016.11월 ~ 2017.3.1
 - 설치방법 : 이동식 구조물에 LED 패널 부착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16.11.03/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 현재 위치는 구조물 전도 시 문화재(덕수궁미술관)의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외벽에서 구조물을 충분히 이격시킬 필요가 있으며
- 구조물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기단을 줄이는 등 덕수궁 경관과 어울리게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시회가 끝나는 2017.3.1.이후 구조물은 즉시 철거되어야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훼손 우려(현 설치물 철거할 것)

6. 서산 해미읍성 주변 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개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주변 주차장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산 해미읍성의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개축하고자 함
 - '15.8.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8.10 부결 : 화장실 및 정자의 규모, 디자인 부적절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61번지
- (3) 신청내용<주차장 확장 및 화장실 개축>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05-1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동문 5-1구역(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0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15.8월) / 부결	2차('16.8월) / 부결	3차('16.11월) / 금회신청
주차장(추가)	10,312m ²	2,127m ²	좌동
화장실	신축 2개소, 296.28m ²	신축 1개소, 148.14m ²	개축 1개소, 53.5m ²
기타	조형물 설치 5개소, 셉터(3.4m×3.4m) 설치 4개소	셉터(3.4m×3.4m) 설치 3개소, 관목(영산홍) 식재	소나무 등 교목 122주, 탱자나무 관목 63주, 산철쭉 177m ² 식재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15.07.14/문화재위원 ○○○)

- 대형버스 주차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안으로 문화재경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주변 차폐조경은 성인 시선 높이인 1.5m 이상의 교목을 열식하되 수종과 식재방식은 전통의 조경수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화장실 개축, 정자 신축은 규모, 위치, 설계를 재검토하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7.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교회본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교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기존 교회 건물(4동)을 철거 후 신축(1동)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10.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철거 후 교회본부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 171-149(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1차('16.10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신청
철거 (4동)	구분	본부건물	부속 건물1	부속 건물2	부속 건물3	좌동
	준공일	'63.12.8	-	-	-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높이 13.4m)	2층	1층	1층	
	건축면적	528.68㎡	58.78	74.2	71.77	
	계	503.73㎡				
	연면적	1,283.69㎡	117.56	74.2	71.77	
	계	1,294.75㎡				
신축 (1동)	- 대지면적 : 974.35㎡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높이 17.5m) - 건축면적 : 552.15㎡ - 연면적 : 2,759.4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 대지면적 : 좌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높이 13.5m) - 건축면적 : 578.31㎡ - 연면적 : 3,228.87㎡ -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6.9.30, 10.31)

- 신청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별표1 양각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물 높이 계획 재검토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8.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진입로 개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진입로를 개선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석촌동 고분군 지정구역 내에 진입로를 개선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09.07 부결 : 시설물 과다 설치로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
- (3) 신청내용<고분군 진입로 개선>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7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1차('16.9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신청
진입광장	화강석 판석 포장 334㎡	화강석 판석 포장 20㎡
경사로	2개소, 연장 20m 및 24m×폭1.8m	2개소, 연장 16m×폭1.5m
황토포장	199㎡	40㎡
돌담 등	배수로, 광장 옹벽, 돌담 및 축대 등 설치	배수로, 돌담 정비
수목	느티나무 1, 소나무 56주 제거	소나무 5주 제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6.9.21/○○대 ○○○ 교수, ○○대 ○○○ 교수)

- 현재 추진중인 계획은 상당 부분 절토가 불가피하며, 절토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대로 시공하기 어려워질 것임(1차 현상변경 신청 내용)
- 따라서, 현재 보존중인 범위 내에 절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가지 대안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도로에 면한 석축을 하단만 남기고 제거함으로써 고분군 조망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현존 계단과 경사로의 폭과 경사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는 방안(현 상태 돌계단은 그대로 두고 넓히는 사업)
 - 상기 개선안 가운데 경사로의 경사도를 1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낮춰진 석축에 접하여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허용기준 6구역에 화성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위원회 심의('09.7월)에서 허가 받은 사항임
- 본 건은 지난 10차 사적분과위원회('16.10월)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 심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 /6구역(신축불가,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 사업내용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허가('09.7.13)		금회 신청		증 감		
		면적(m ²)	(%)	면적(m ²)	(%)			
합계		1,188,438.6	100.0	1,188,438.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73,769.1	23.0	331,545.0	27.9	증	57,775.9	
	단독주택(일반)	68,566.0	5.8	62,630.0	5.3	감	5,936.0	
	단독주택(한옥)	-	-	31,652.0	2.7	증	31,652.0	
	공동주택용지	203,570.7	17.1	234,440.0	19.7	증	30,869.3	
	근린생활시설	1,632.4	0.1	2,823.0	0.2	증	1,190.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14,669.5	77.0	856,893.6	72.1	감	57,775.9	
	상업 · 업무	소계	21,685.6	1.8	57,566.0	4.8	증	35,880.4
		준주거용지			12,157.0	1.0	증	12,157.0
		상업시설용지	21,685.6	1.8	12,768.0	1.1	감	8,917.6
		숙박시설용지	-	-	32,641.0	2.7	증	32,641.0
	종교시설	-	-	16,597.0	1.4	증	16,597.0	
	문화시설	62,759.7	5.3	0.0	0.0	감	62,759.7	
	공원 · 녹지	소계	546,364.0	46.0	478,350.0	40.3	감	68,014.0
		근린공원	459,114.1	38.7	327,217.0	27.5	감	131,897.1
		체육공원	19,249.6	1.6	-	-	감	19,249.6
		역사공원	-	-	106,577.0	9.0	증	106,577.0
		어린이공원	12,846.3	1.1	1,732.0	0.1	감	11,114.3
		완충녹지	24,967.2	2.1	32,496.0	2.7	증	7,528.8
		연결녹지	-	-	10,328.0	0.9	증	10,328.0
		경관녹지	30,186.8	2.5	0.0	0.0	감	30,186.8
	교육 시설	소계	42,716.1	3.6	30,550.0	2.6	감	12,166.1
		유치원	3,966.8	0.3	2,814.0	0.2	감	1,152.8
		초등학교	12,341.7	1.0	13,480.0	1.1	증	1,138.3
		중학교	13,053.2	1.1	14,256.0	1.2	증	1,202.8
		고등학교	13,354.4	1.2	-	-	감	13,354.4
	광장	-	-	4,965.0	0.4	증	4,965.0	
	공공공지	-	-	13,725.0	1.2	증	13,725.0	
	주차장	8,461.3	0.7	6,559.0	0.6	감	1,902.3	
	공공청사	2,439.5	0.2	-	-	감	2,439.5	
	저류지	26,594.3	2.2	29,674.0	2.5	증	3,079.7	
	하천(소하천)	22,977.4	1.9	13,078.0	1.1	감	9,899.4	
	도로	소계	180,671.6	15.2	203,001.6	17.1	증	22,330.0
도로		161,995.9	13.6	191,026.6	16.1	증	29,030.7	
보행자전용도로		18,675.7	1.6	11,975.0	0.9	감	6,700.7	

<시설별 건축 계획>

구 분		면적(m ²)(세대수, 층수)		비 고	
		기 허가('09.7.13)	금회 신청		
면적 합계		411,831.5	442,819.0	증 30,987.5	
총 세대수		3,356세대	4,239세대	증 883세대	
500m 내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12,111.4 (90세대, 5층이하)	17,350.0 (130세대, 5층이하)	증 5,238.6 (40세대)
		단독주택	68,566.0 (179세대, 2~3층)	94,282.0 (359세대, 2~4층)	증 25,716 (180세대)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11,807.6 (6층이하)	-	감 11,807.6
		문화시설	62,759.7 (2층 이하)	-	감 62,759.7
		준주거용지	-	12,157.0 (5층이하)	증 12,157.0
		초등학교	12,341.8 (4층 이하)	13,480.0 (5층)	증 1,138.2
		중학교	13,053.2 (4층 이하)	14,256.0 (5층)	증 1,202.8
		고등학교	13,354.4 (5층 이하)	-	감 13,354.4
		유치원	3,966.8 (3층 이하)	2,814.0 (4층)	감 1,152.8
		근린생활시설	1,632.4 (2~3층)	2,823.0 (3층이하)	증 1,190.6
		공공청사	2,439.5 (2~3층)	-	감 2,439.5
		종교용지	-	16,597.0 (3층이하)	증 16,597.0
		숙박시설 (한옥)	-	32,641.0 (4층이하)	증 32,641.0
		주차장	7,388.3 (3~6층)	4,663.0 (3~5층이하)	감 2,725.3
500m 밖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191,459.4 (3,087세대, 15층이하)	217,090.0 (3,750세대, 8~15층이하)	증 25,630.6 (663세대)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9,878.0 (6층이하)	12,768 (6층이하)
	주차장	1,073.0 (6층이하)	1,897.0 (6층이하)	증 824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위원 ○○○, ○○○, ○○○)

- 상기 안은 '09년 7월 조정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09년 현상변경 이후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현황과 계획이 비교될 수 있는 상세한 자료제출이 요구됨.
- 용건릉 동쪽 현황 능선(지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초장지 관련 유적을 온전히 보존하되, '09년 현상변경 허가 받은 사항을 존중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초장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추가 확보 필요
 - 한옥호텔, 한옥마을에 대한 규모 조정 필요

10. 경주 헌덕왕릉 주변 변전소 신축 및 변전설비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주변 변전소 신축 및 변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헌덕왕릉 주변에 변전소 신축 및 변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 사적분과 제2차 위원회('16.02.17) 부결 :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조망성, 마루선, 왜소화)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사적분과 제5차 위원회('16.05.11)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사적분과 제6차 위원회('16.06.08) 부결 : 지상 노출 높이 하향 조정 필요
- 사적분과 제8차 위원회('16.08.10) 부결 : 조경차폐 등 계획보완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헌덕왕릉(사적 제29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
- (3) 신청내용<변전소 신축 및 변전설비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299-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변전소 1동 신축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최고높이(m)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978.34	16.1
지상1층	철골구조		978.34	
지상2층	철골구조		498.96	
지상3층	철골구조		289.28	
	합 계		2,744.92	

- 구내 전력구
 - 송전전력구 : 송전 3회선, 통신 1회선(규격 2.7*2.8m, 길이 115m)
 - 배전전력구 : 배전 28회선(규격 2.3*2.8m, 길이 10m)
- 경계울타리(담장) : 컬러메시웬스 (W2,000XH1,800)
 - 최종높이(기초포함) : 2,150mm
 - 설치길이 : 약 362m(경계길이-대문길이=372-10)
- 옥외 변전설비
 - EB-A(End Box In Air) : 9기 신규설치
 - 기중중단접속(함) : 가공 송전선로→지중 송전선로
 - 규격(1기) : 가로x세로x높이(900x900x4,542)
 - S.C(Static Condenser) : 12BANK(수직형 10BANK+수평형 2BANK)

기존설비 이설

- 병렬커패시터, 정전콘덴서 : 전압보상설비
 - 규격(1기) : 가로x세로x높이(11,200x7,000x3,251)
 - 웬스울타리 : 길이 106.4m, 높이 1.5m
- 철거공사
 - 옥외철구형 변전설비
 - M.Tr(주변압기) : 4BANK 신축 변전소 옥내로 이설(지하1층 평면도 참고)
 - 그 외 : 해체 후 반출
 - ※ 변전설비 철거에 따른 토공사(굴착 등)는 불요
 - 배전반실 철거(규모 343.2㎡, 철거방법 : 폐기물지정업체 위탁철거)
 - 기존 흙담장 철거(담장길이 : 562m, 높이 1.5m)
 - 여유부지 : 자갈 or 콘크리트 포장(현상태 유지)
- 조경공사
 - 메타쉐콰이어 : 13그루, 10m
 - 잣나무 : 14그루, 5m

(4) 신청인 의견

- 우리회사는 본 대지에 경주 및 인근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77년 6월 154kw 경주변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후 40여 년이 경과되면서 설비전체가 노후되어 부분적 현대화 사업으로는 성능확보가 곤란하여 경제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설비보강 중단으로 설비의 노후도 및 피로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옥외 변전시설을 옥내로 이설하는 옥내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54kw 경주변전소보다 안정적인 전기공급시설로 구축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을 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2.04/문화재전문위원 ○○○)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건축 외관디자인이 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신청안으로 인해 당해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조망성, 마루선, 왜소화)을 초래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6.05.27/문화재위원 ○○○, ○○○, ○○○)

- 상기 구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에 위치하는 곳임.
- 기존 변전소 자리에 새롭게 변전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적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로 시설물을 넣고(SUNKEN GARDEN) 지상은 둔덕과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변전소 시설물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화재와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높이는 4~5m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
- 건물의 외관은 명·채도가 낮은 색상, 무반사 재질로 함.
- 경관 및 차폐 조경은 사계절을 고려한 자연풍경식으로 배식함.
- 시설후의 경관을 왕릉에서 바라본 시뮬레이션 도면을 첨부함.
- 터파기 이전 표본조사 등의 유구존재 여부를 확인함.

(3) 지자체 의견

- 경주시, 경주시의회, 주민의 요청을 한전이 수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주시 전체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임.
- 현재 변전소는 철골조로 높이 솟아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전자파,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변전소 내 기계설비의 높이는 정해져 있고 설비와 천장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로 설계하였음.
- 변전소 건물 높이를 낮추고 면적을 넓히고자 할 경우 공사하는 동안 정전 시켜야 하는 기계설비 수가 늘어나게 되어 경주시 일부 또는 전체가 공사 기간 동안 정전될 수밖에 없어 건물 높이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0.5 ~ 11.3m 높이로 차폐조경을 계획하였음.
- 경주시, 경주시의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 경관 개선, 기술적인 한계, 차폐조경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안으로 하되 성토 규모 및 조경은 전문가 자문 필요

11.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 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0차 위원회('16.10.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 기존 인근 허가사례(부영아파트), '14.3월
 - 사업면적 : 122,342㎡
 - 건축면적 : 21,061.07㎡, 연면적 : 451,926.21㎡
 - 최고높이 : 84.81m
 - 규모 : 총 50개동(3,230세대)
 - 11개동 : 지상 30층, 최고높이 84.81m
 - 10개동 : 지상 25층, 최고높이 70.81m
 - 5개동 : 지상 20층, 최고높이 56.81m
 - 5개동 : 지상 15층, 최고높이 42.81m
 - 19개동 : 지하 2층~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1963. 1. 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모화리 등 일원
- (3) 신청내용<외동 부영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6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4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

○ 사업내용(굵은 글씨 :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분		내용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대지면적		71,237㎡		
건축규모		지하층/ 지상1~32층 (26개동)		
세대수		1,780세대 (3단지 :1,226세대, 4단지 : 554세대)		
연면적	아파트	지하층	8,050.4948㎡	
		지상층	177,022.5496㎡	
		소계	179,073,0444㎡	
	부속동	지하층	-	
		지상층	3,964.7500㎡	
		소계	3,964.7500㎡	
	전체	지하층	8,050.4948㎡	
		지상층	174,987.2996㎡	
		합계	183,037.7944㎡	
건 폐 율		15.73 %		
용 적 율		245.642 %		
최고 높이	18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24m)=54.45m(500m이내)	2동
	20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56.81m)+옥탑층높이(3.24m)=60.05m(500m이내)	2동
	22층	59형	아파트층수높이(62.41m)+옥탑층높이(3.42m)=65.83m(500m이내)	1동
	25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24m)=74.05m(500m이내)	2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70.81m)+옥탑층높이(3.42m)=74.23m(500m이내)	1동
	29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82.01m)+옥탑층높이(3.24m)=85.25m(500m이내)	1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82.01m)+옥탑층높이(3.42m)=85.43m(500m이내)	1동
	31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24m)=90.85m(500m이외)	2동
		59형	아파트층수높이(87.61m)+옥탑층높이(3.42m)=91.03m(500m이외)	2동
	32층	84형	아파트층수높이(90.41m)+옥탑층높이(3.24m)=93.65m(500m이외)	1동
	3층 이하		관리동, 관리실, 근린생활시설(500m이내)	
3층 이하		관리실(500m이외)		2동
합 계				26동

(4) 신청인 의견

- 울산과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350여 개의 자동차 및 중공업 계통의 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실·모화·구어·냉천·개곡·석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조성되어 외동읍의 상주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뉴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신축 규모 및 높이 과다)

12.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선덕여왕 화백회의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선덕여왕 화백회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선덕여왕 화백회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 도로 터널 개설 허가('12.9.17)
- ※ 도로 터널 개설 변경허가('16.6월) : 터널 위 조정 변경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선덕여왕 화백회의 조형물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3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3.6m×3.7m×1.8m(높이)
 - 재질 : 황동 브론즈(두께 5T)
- (4) 신청인 의견
 - 신라탐방길 복원으로 이를 찾는 탐방객에게 화백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전달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성과 맞지 않음

13.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전선 지중화 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전선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일원 인근 원화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14.6월 조건부허가 : 굴착예정지에 대해 시굴조사 선행,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12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사적 제16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일원, 황남동 104-1 일원
- (3) 신청내용<원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
 - 당초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490-8 일원, 원화로(동궁과 월지~팔우정삼거리)(문화재구역, 1구역, 4구역)
 - 변경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110-4번지, 인왕동 910-1번지 일원, 원화로(동궁과 월지~팔우정삼거리)(문화재구역, 1, 4구역)
 - 사업내용 : 지중화(전선, 통신선) L=1.0km
 - 관로매설 : L=1.0km (파형관 175mm×2~4공)
 - 차도굴착 : H=1.4~1.8m, B=1.3~1.8m
 - 보도굴착 : H=0.9~1.0m, B=1.0~1.1m
 - 지상기기 설치 : 14대
 - 지상개폐기 : 6대(H=1.4m, B=1.5m)
 - 지상변압기 : 8대(H=1.4m, B=1.5m)

- 변경사항 : 0.7km(선덕여고 사거리~팔우정) 굴착구간을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
- 소요 사업비 : 1,470백만원
 - 재원 : 한국전력공사(통신업체) 50%, 국비 및 지방비 5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06.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대릉원 북동측의 팔우정 삼거리부터 동궁과 월지 앞에 이르는 1구역(보존구역)과 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의 도로 1km 구간에 대하여 깊이:1.7m, 폭:1.3m 정도로 굴착하여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지상에는 개폐기와 변압기(높이:1.4m, 폭:1.5m)를 14기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선 지중화는 역사문화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단, 해당 공사 대상지가 다양한 고분군에 연접한 유물산포지이므로 굴착 예정지에 대하여는 시굴 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필요

14.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년 사적분과 제11차 회의('15.11.11.)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던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설치 건에 대하여 연장 운영하려고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3 일원
- (3) 신청내용<헬륨기구 운영 연장>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1년에서 추가 3년 연장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으로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 지역방문이 아닌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수원화성에 깃든 정조대왕의 위대한 사상을 널리 알리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문화재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조망하기 위하여 지난 2015.11.30. 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받아 2016.8.10.일부터 계류식 헬륨기구(플라잉수원)을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

150m 상공에서 수원화성을 관람하는 것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특히 야간에 바라보는 수원화성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2016.8.10.일부터 현재까지 약 25,979명(60일간)이 관람하였으며, 평일 평균 약 300여명, 토·일등 휴일평균 1,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헬륨기구는 이제 수원화성의 명실상부한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과 강풍, 폭우 등 날씨가 규정 이하 나쁠 경우 철저한 운행 여부를 준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헬륨기구(플라잉 수원)는 수원화성을 조망하는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당초 염려되었던 경관은 화성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하여 “정조대왕의 꿈”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상품화 하였습니다.
- 헬륨기구는 수원화성을 좀더 새롭게 조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야간으로 깊은 감동과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수원화성 헬륨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추가 6개월 연장

15.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터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공구의 터널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 (3) 신청내용<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06-5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6m 이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2022년
 - 연장 : 8,338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통과구간 : L=799m, 통과깊이 : 약 지하 200m)
 - 폭원 : 31.8m(왕복 6차로)
 - 문화재보호방안 : 발파진동 상시 모니터링(구간 : L=4.9km)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 보완 및 현지조사 후 재검토

16.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 (3) 신청내용<2017년 탐방로 등 정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개요
 - 탐방로 정비 : 야자매트, 횡배수구, 목계단
 - 시설물 정비 : 이정표(방향안내판), 안내판, 휴게정자, 버스정류장, 야외테이블 및 의자, 가로수(불량목 교체), 관리번호표 부착
 - 훼손지 복구 : 식생토양흡막이, 목재원주목 목책보수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7. 연천 전곡리 유적 내 구석기 겨울여행 행사 개최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구석기 겨울여행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 전곡리 유적 내에서 2017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일원
- (3) 신청내용<2017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행사 개최>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일원(문화재구역)
 - 내용
 - 기간 : 2016.1.7. ~ 2016.2.5.(30일간)
 - 예산 : 998백만원(군비)
 - 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환영마당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주차안내, 환영의 문, 겨울놀이터(스노우 모빌)
겨울놀이체험	눈썰매장, 얼음미끄럼틀, 눈조각공원, 얼음마을, 얼음조각, 어린이놀이기구(3조)
선사시대체험	○야외체험 : 구석기바비큐, 구석기퍼포먼스 ○실내체험 : 선사시대 불피우기, 빙하시대 의복체험, 주먹도끼 장신구 만들기, 주먹도끼 쿠키 만들기, 구석기 포토존
부대시설	축제 매점, 인디언공연, 의료센터, 청결상황실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전사고 예방 조치

18. 파주 삼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파주 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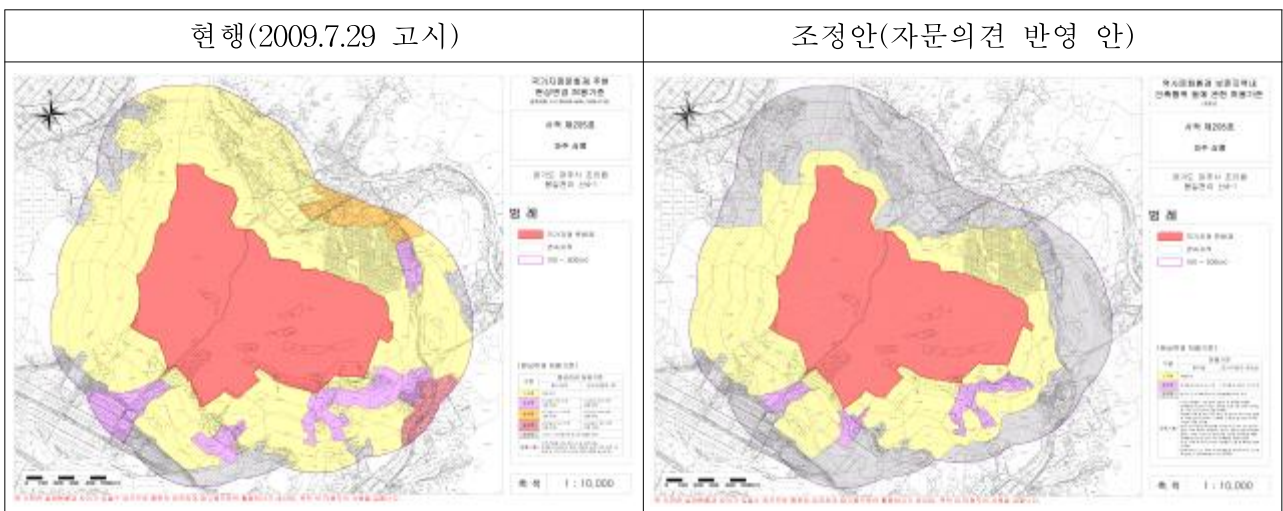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 (3) 신청내용<파주 삼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 공고기간 : '16.9.20~10.9 (20일간) / 의견없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행(2009.7.29 고시)			재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5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6.09.01/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대학교 교수 ○○○)

- 본 건은 파주 삼릉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일체성·조망성·마루선·왜소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의 경관지표는 장소성·일체성·조망성·마루선의 검토가 필요함.
- 남측 전면은 진입경관을 고려하여 62-309창까지 기고시 내용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측 캠프하우스 지역의 지형은 파주삼릉의 우백호 지역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음.
- 또한, 북측의 산52-1임 내에 도로 정비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이를 위하여 필지가 분할될 경우, 임야를 제외한 북측의 필지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9. 파주 소령원 및 파주 수길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파주 소령원 및 수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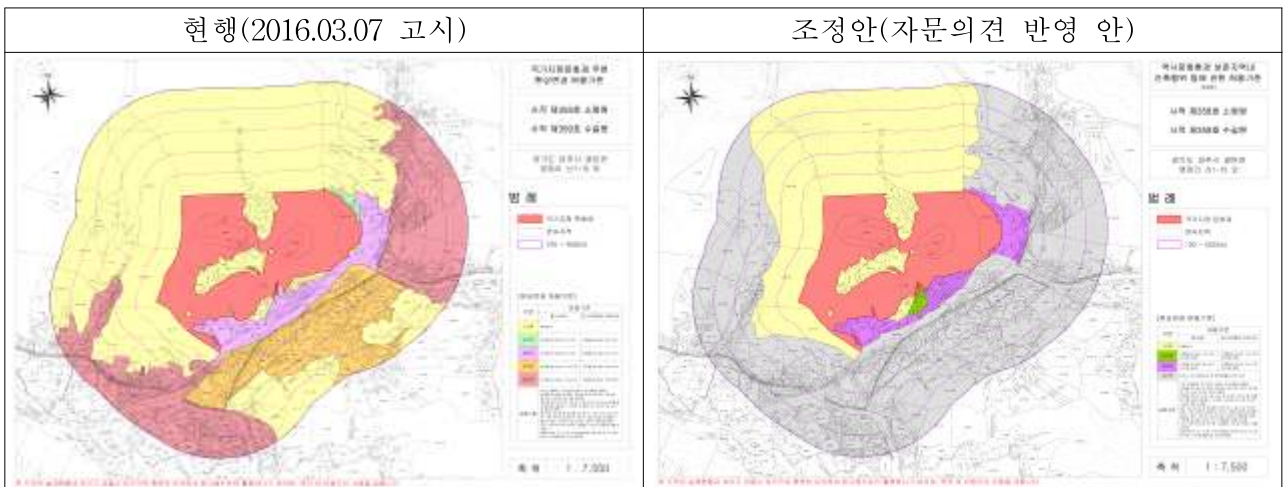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소령원(사적 제358호),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 (3) 신청내용<파주 소령원 및 수길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 공고기간 : '16.9.20~10.9 (20일간) / 의견없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행(2016.03.07 고시)			재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주택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주택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주택에 한함)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도면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6.09.01/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대학교 교수 ○○○)

- 본 건은 파주 수길원 및 소령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 (장소성·일체성·조망성·마루선·왜소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의 경관지표는 장소성·일체성·조망성·마루선의 검토가 필요함.
- 남측 전면은 진입경관을 고려하여 도로 서측은 기고시 내용을 따르고, 도로 동측의 6필지(271-2대, 271-3대, 273대, 274-1답, 279대, 280전)는 건축물 최고높이 평지붕 5m(경사 7.5m) 이하의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됨.
- 소령원 내부 1구역의 재실 추정지 등은 문화재구역 확대가 요구되며, 동측의 산191-2 임야의 경계부위는 적정 높이의 제한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0. 영월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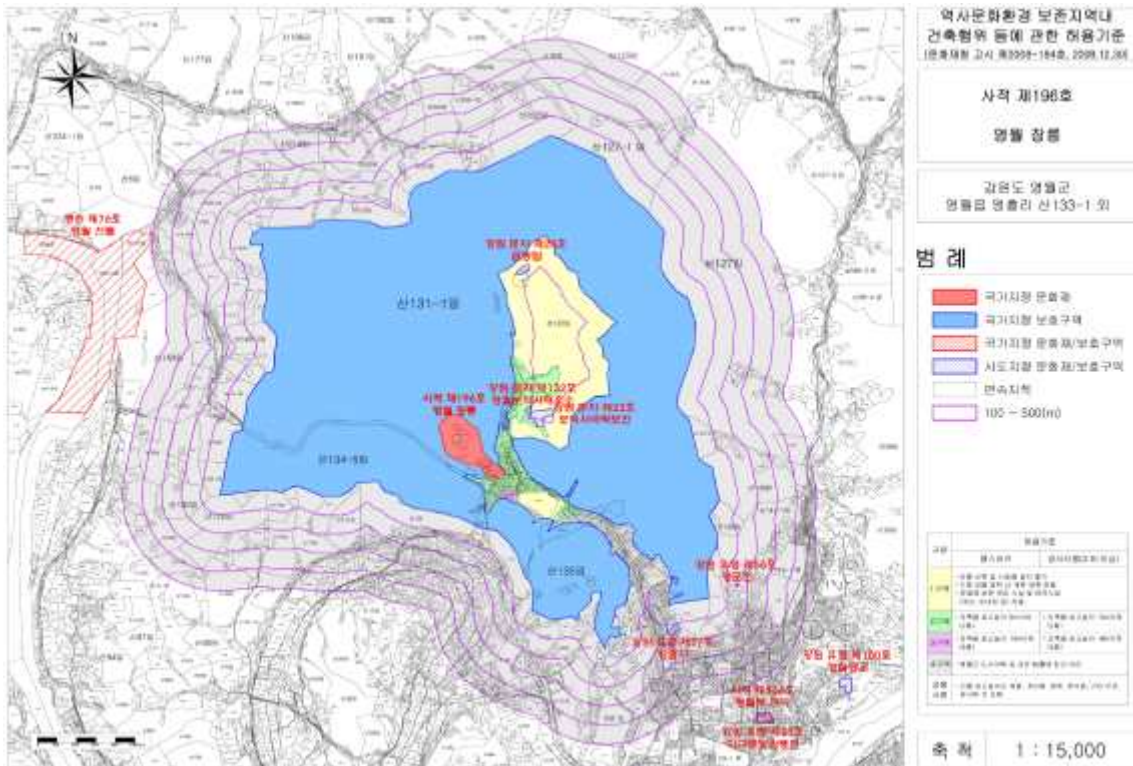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의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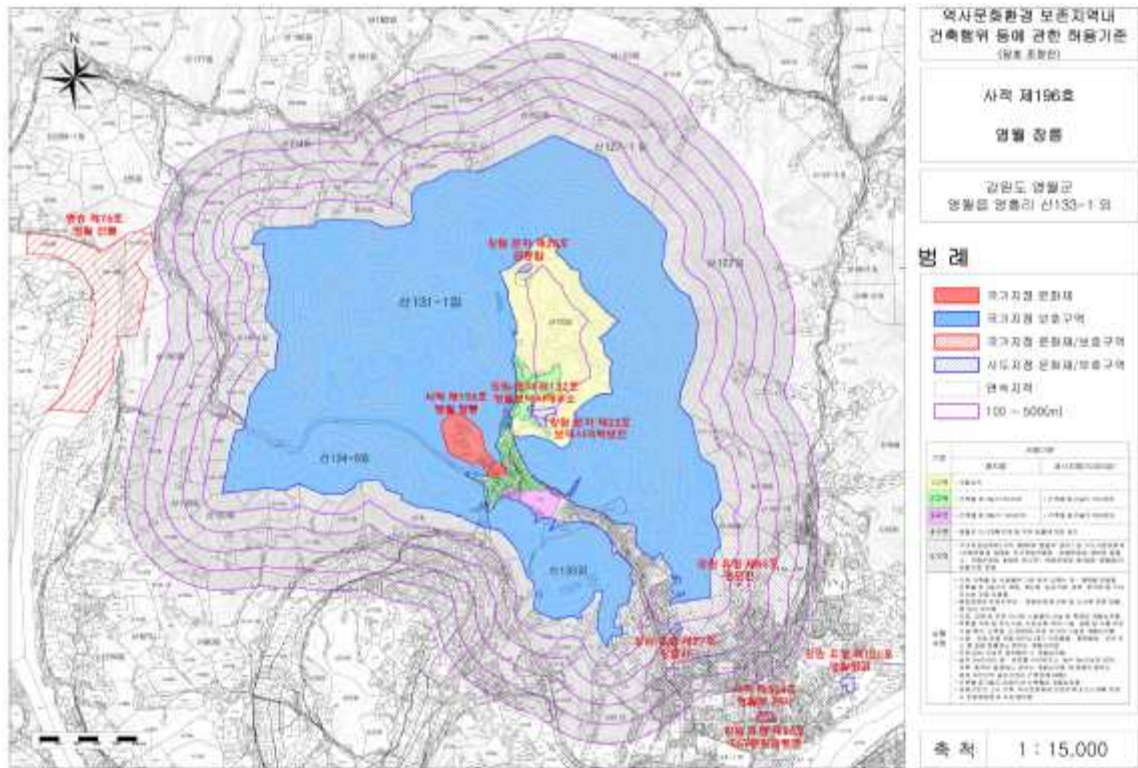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계획」에 따라 영월 장릉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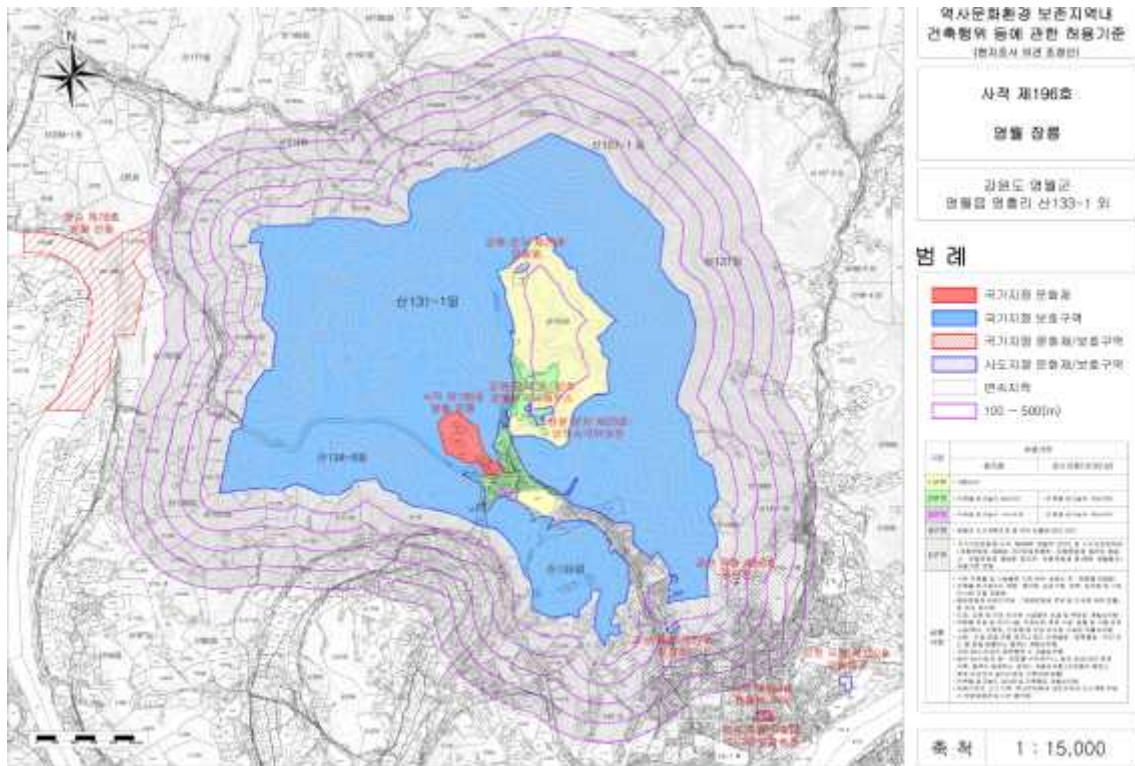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월 장릉(사적 제19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
- (3) 신청내용<영월 장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허용기준



○ 지자체 신청(안)



○ 현지조사 의견 조정(안)



○ 허용기준 기존 및 변경내용

구분	기존 허용기준		변경 허용기준(안)	
	평스라브	경사지붕(3:10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 및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허용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34호 영월부관아)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6호 자규류 및 관풍헌, 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56호 영모전,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월향교)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31/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영월 장릉의 허용기준을 장소성, 일체성, 조망성의 지표에 의해 합리적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허용기준을 유지하되, 연지 동쪽의 마을은 도시계획 및 조례에 의한 곳으로 하여도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1. 연천 송의전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23호 「연천 송의전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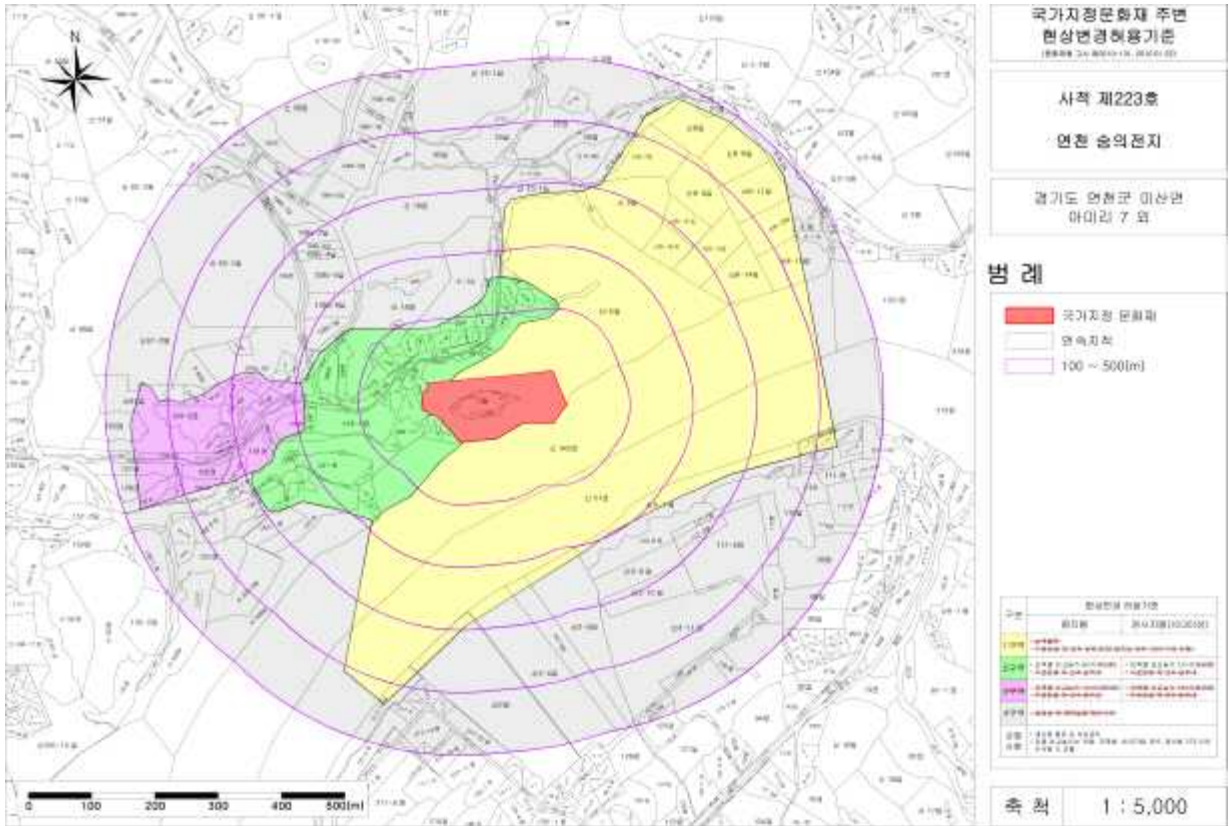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연천군 내 소재 연천 송의전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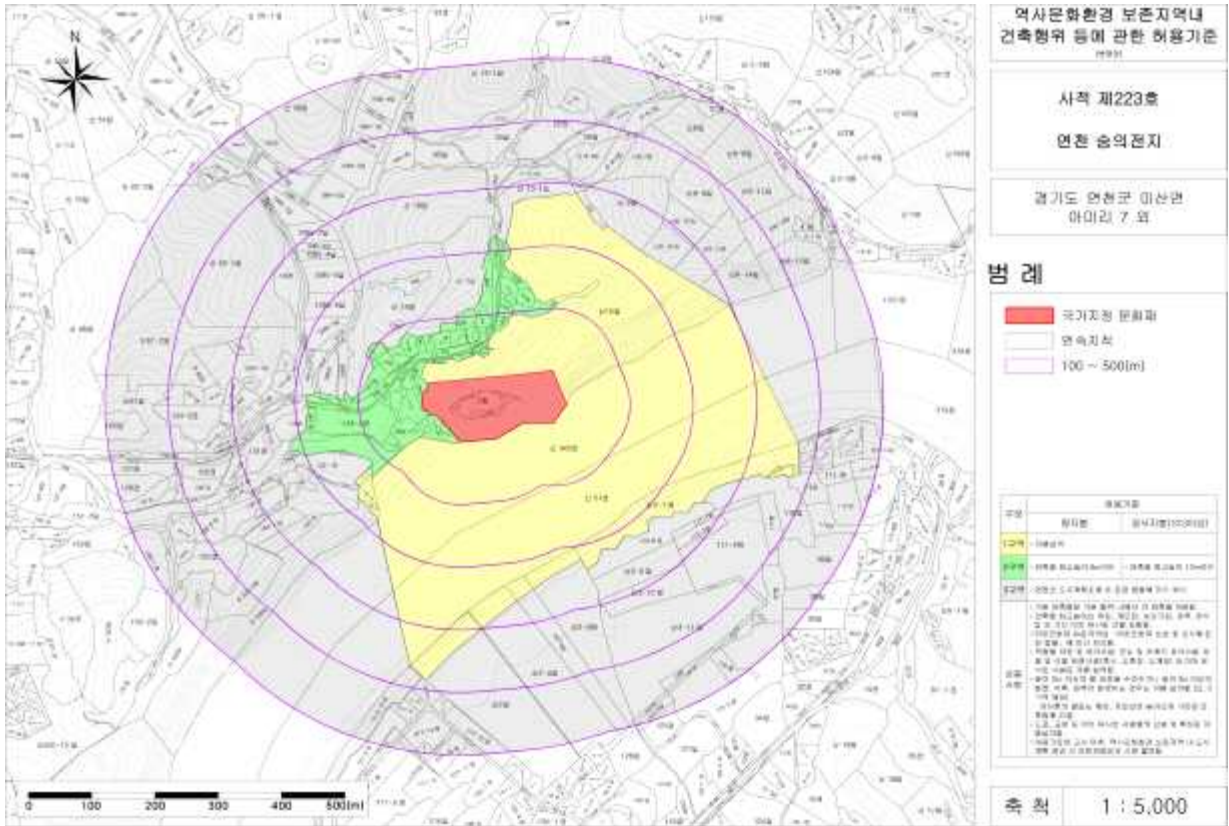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송의전지(사적 제223호 / 1971.12.28.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신축불가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4구역	○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축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단, 3구역은 제외)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1/문화재전문위원 ○○○, ○○○)

- 송의전지 전면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송의전지 남서쪽의 주택, 식당 건물 부분은 현재와 같이 2구역으로 존치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2. 연천 경순왕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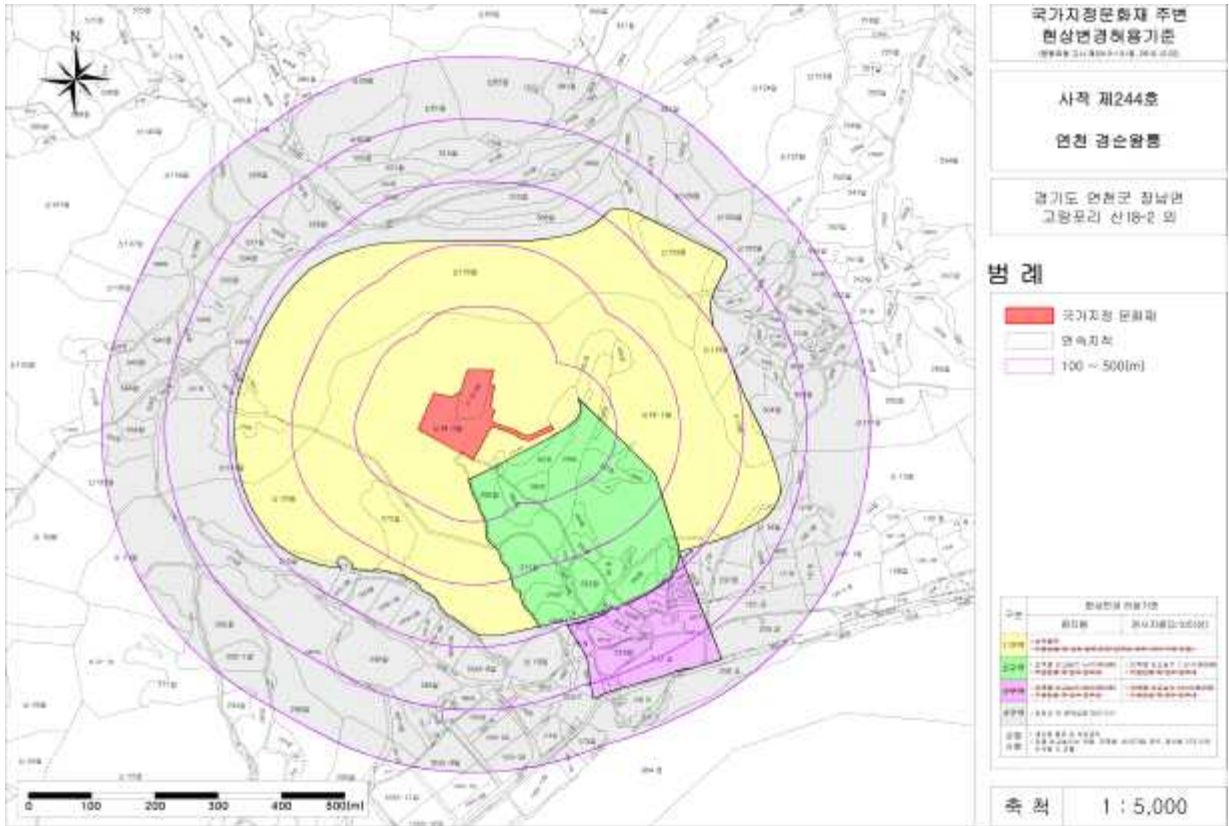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연천군 내 소재 연천 경순왕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경순왕릉(사적 제244호 / 1975.6.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신축불가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4구역	○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단, 3구역은 제외)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3.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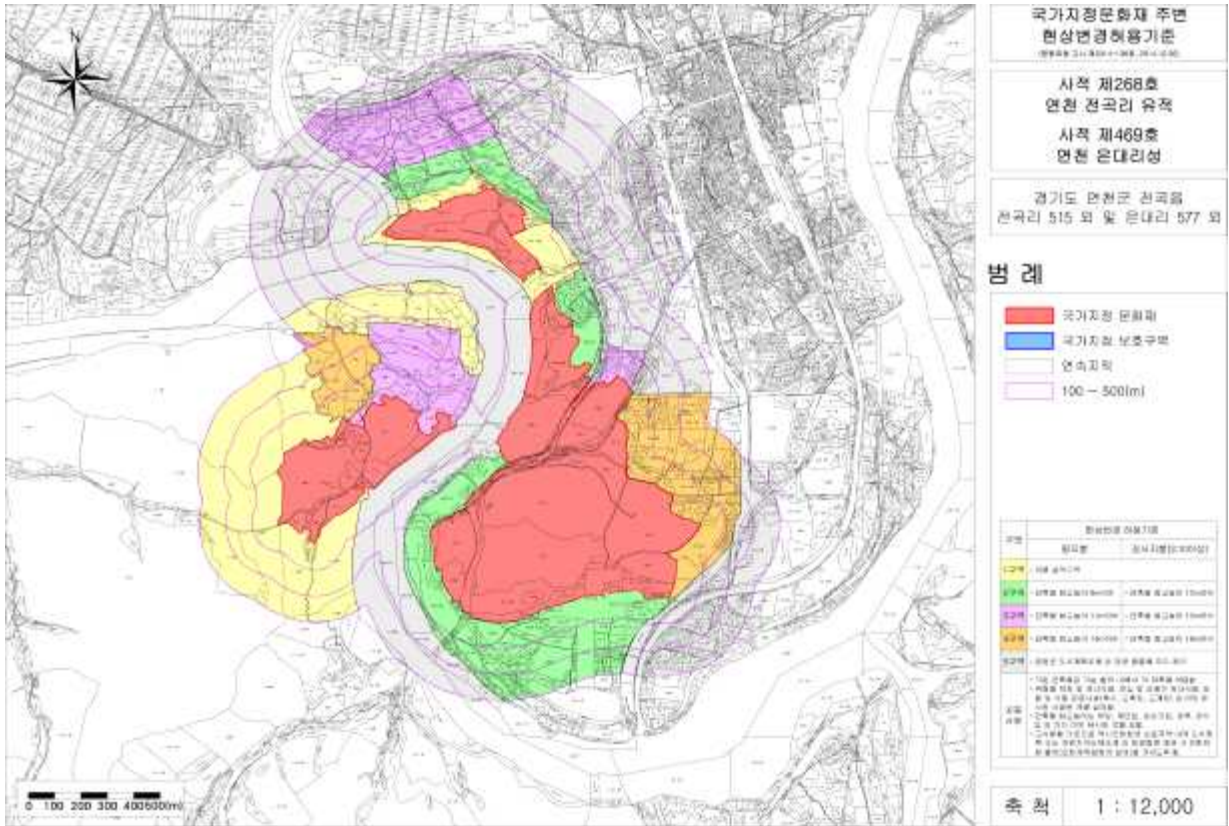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연천군 내 소재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연천 은대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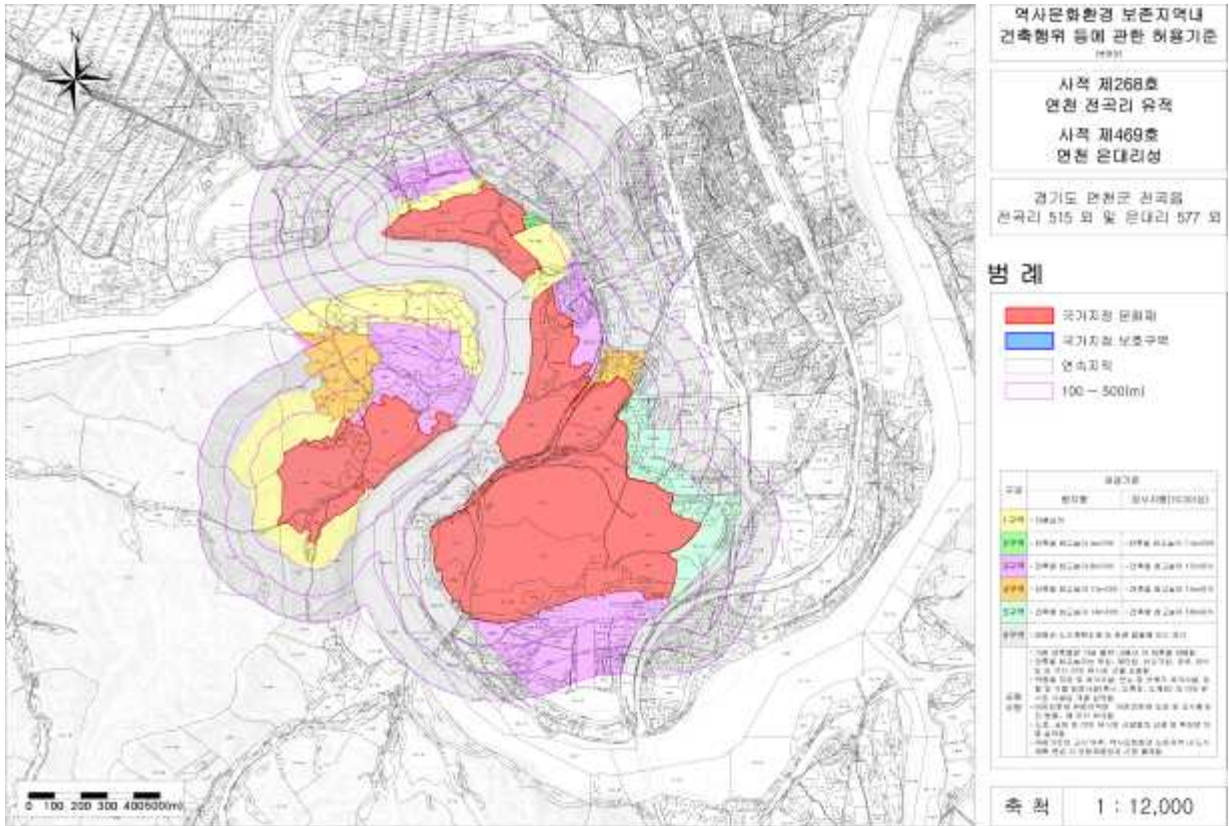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 일원
 - 연천 은대리성(사적 제469호 / 2006.1.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0/문화재위원 ○○○, ○○○)

- 전곡리 유적은 하천 양안 부분을 현재 기준으로 존치하여 선사시대 생활 지역의 지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은대리성은 관방유적으로 조망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쪽 경각지형에 대한 지형 보호를 위하여 현 기준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4. 연천 호로고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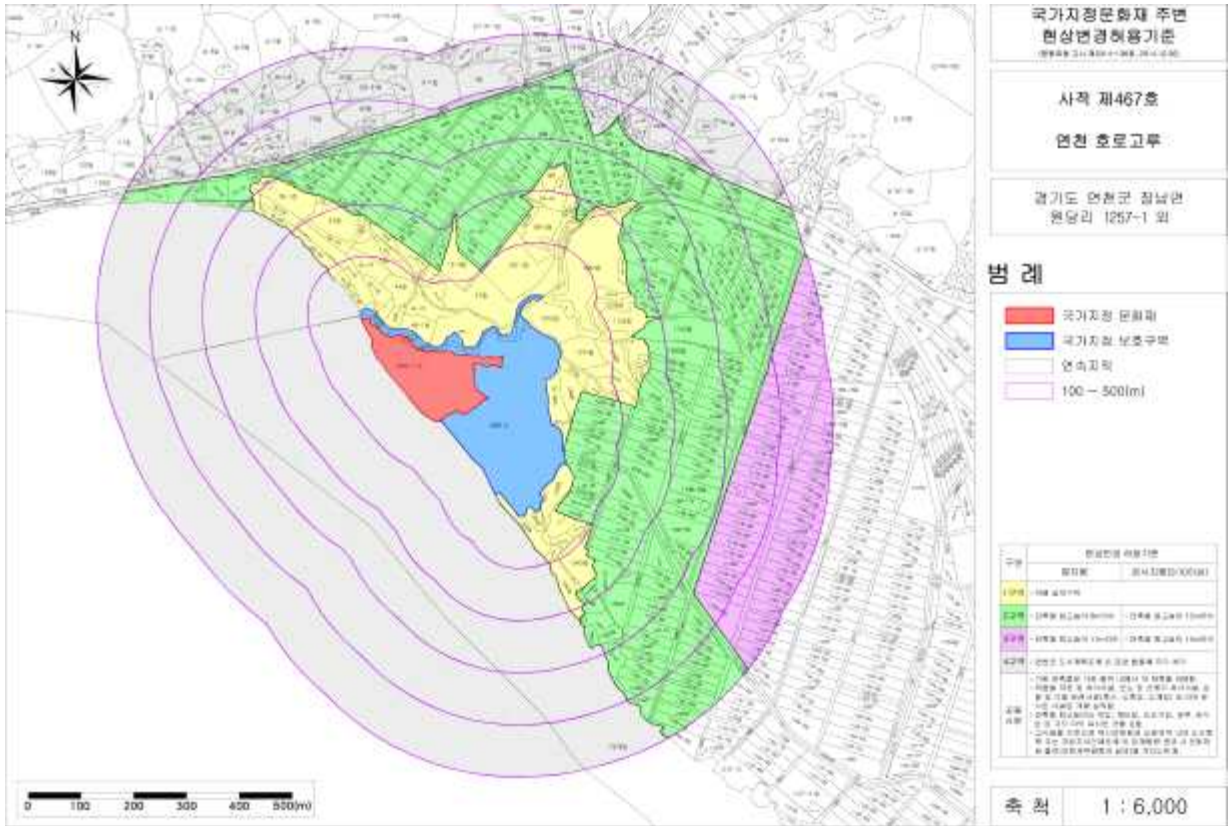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연천군 내 소재 연천 호로고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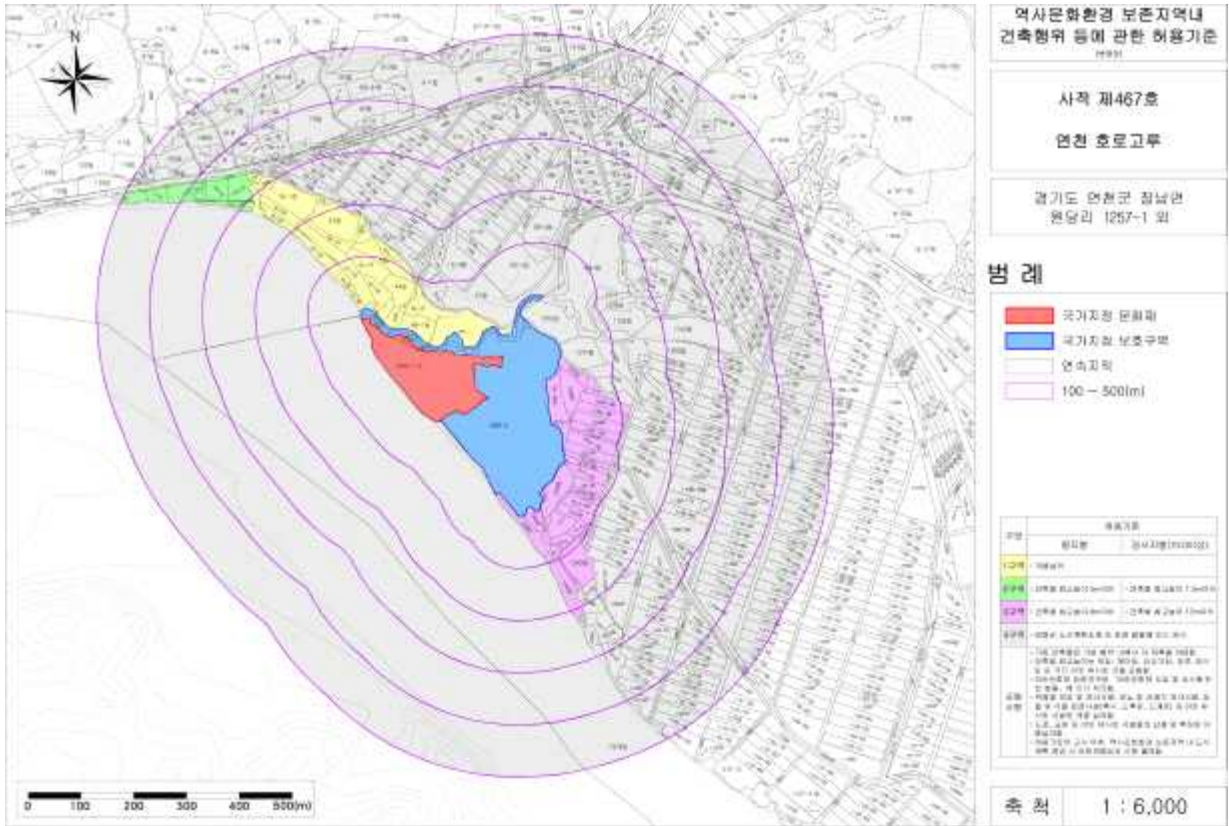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 2006.1.2.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0/문화재위원 ○○○, ○○○)

- 호로그루는 관방유적으로 조망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쪽 경작지나 하안 등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존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4구역을 축소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5. 연천 당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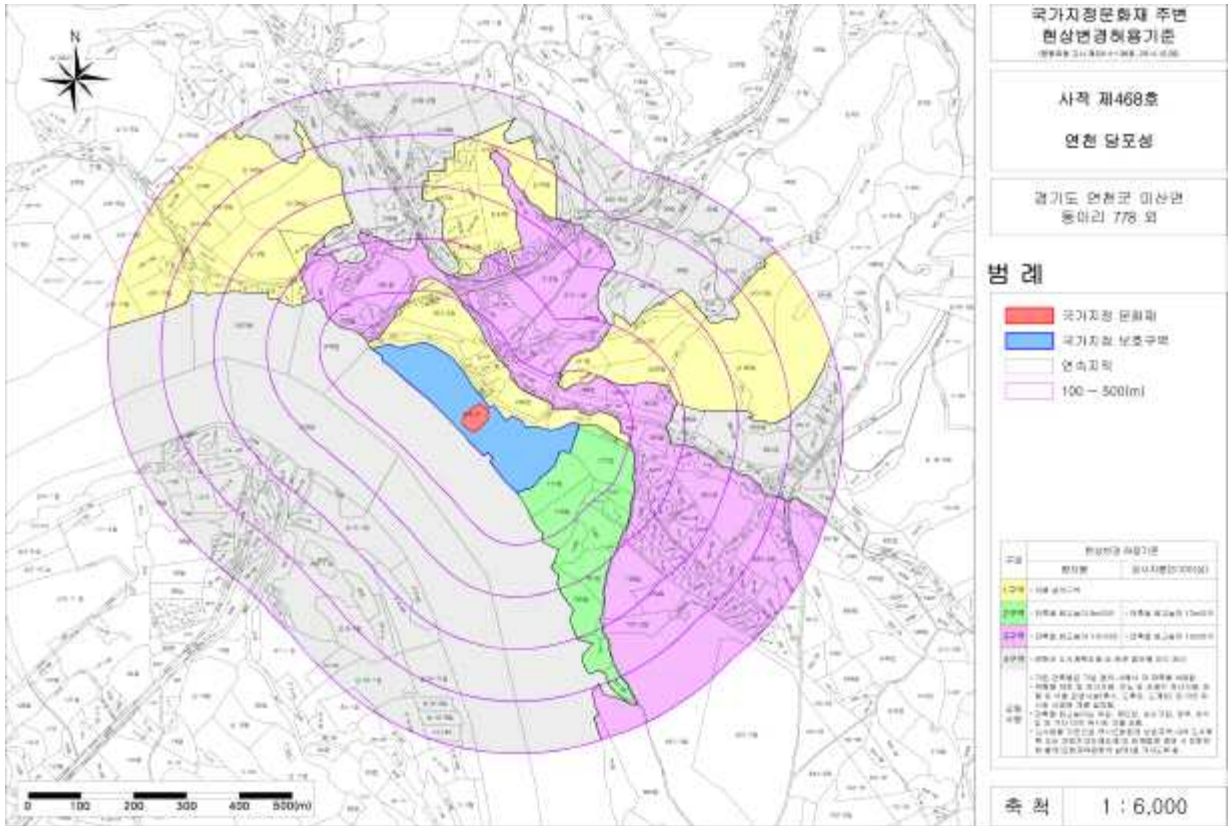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연천군 내 소재 연천 당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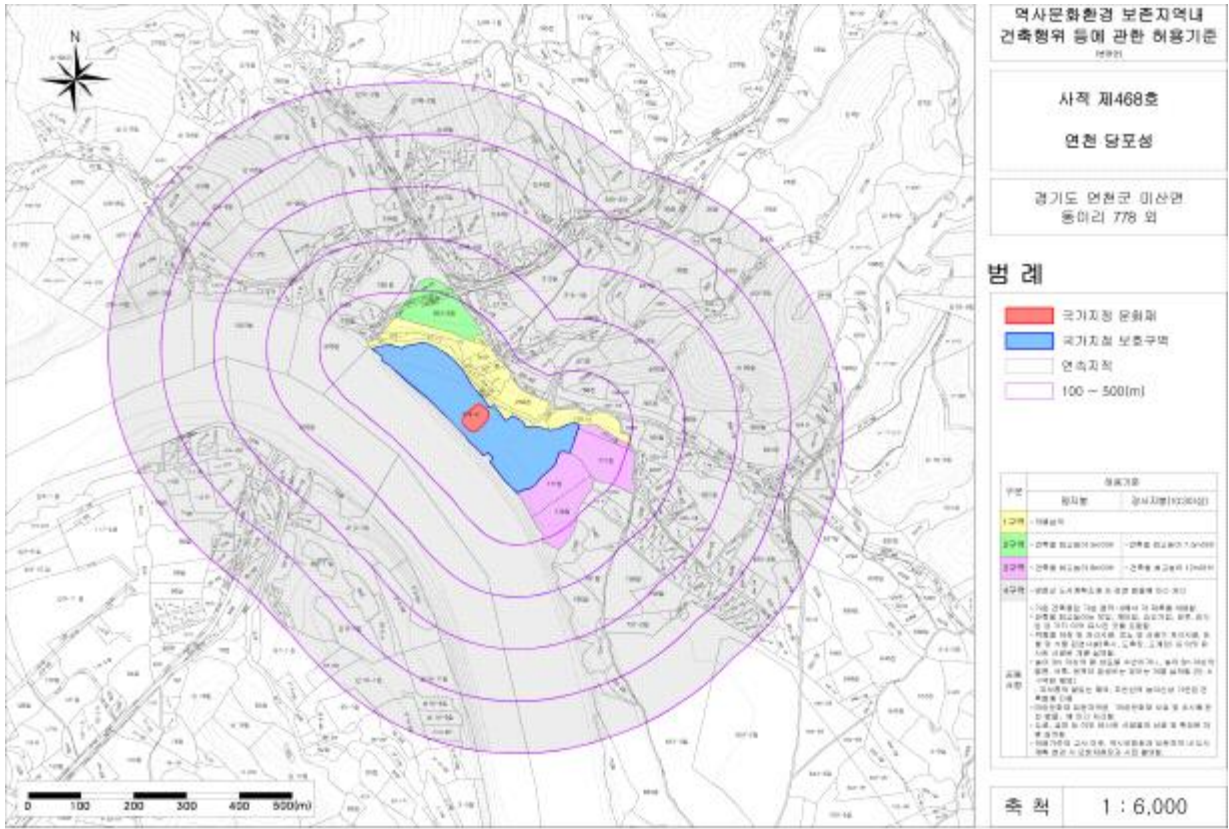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당포성(사적 제468호 / 2006.1.2.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88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분	경사지분(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단, 4구역은 제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0/문화재위원 ○○○, ○○○)

- 당포성 사적 지정구역은 현재의 보호구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포성 북쪽과 동쪽의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주변까지는 현재 기준대로 존치하고 일부 지적선 정리를 하였으면 함.
- 아울러, 북쪽 도로 건너편 두 개의 봉우리는 봉수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곳이므로, 현재와 같이 1구역으로 존치하여 지형을 보호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6.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 행위허용 기준 마련 이전인 2008년 강화군수가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영향없음'으로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면적 175㎡, 높이 6m)이 허가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1967.0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건립>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1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8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1동)
 - 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 신청면적 : 992㎡
 - 건축면적 / 연면적 : 165㎡ / 165㎡
 - 1층, 평지붕, H=5.5m
- (4) 신청인 의견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 경계선상에 있으나 주위에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와 비슷한 건물들이 있어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미 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물 방향, 위치 이동이 있으며 당초 허가 받은 면적, 높이보다 감소하여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7.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문화관광 자원 홍보 등을 위한 홍보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홍보판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13-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LED 전광투광유리(L=15.5m, H=6.5m)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자체 자문의견('16.10.31/○○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문화기획학과 교수 ○○○, 도 문화재전문위원 ○○○)
 -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홍보, 선양의 취지를 갖는 시설물로 문화재보호의 취지에 부합함
 -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시설로서 문화재보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 해당 문화재와 경관상 조화를 이루는 조형으로 설치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환경 저해 우려

28.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경사로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충의사(사당)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사적 제229호)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번지
- (3) 신청내용<경사로 설치>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진입경사로 설치 62m(폭 1.5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5.10.2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의 충의사에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흙으로 된 경사로가 있고, 이를 포장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치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마감재료에 있어서는 경관 친화적인 황토포장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9.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농업용 관정 개발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에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09.07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농업용 관정 설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46-18(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농업용 관정(깊이 20m, 관경 50mm) 개발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상당산성 동문지는 초축 시의 동문지에서 현 위치가 지형상 옹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방어상 유리하다고 하여 이설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본 신청 농업용 관정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동문지 진입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0.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흥덕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m 이격된 곳에 기존에 다세대주택(4~5층, '14년 2월) 또는 단독주택(1층, '15년 2월)으로 허가된 사항을, 소유자 변경 및 분필 후 다세대주택(5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6.9.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운동 866번지 등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1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2, 342-34{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14.2월)	기 허가('15.2월)	1차('16.9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
신축내용	다세대주택(7동)	단독주택(8동)	다세대주택(1동)	다세대주택(1동)
건축규모	지상5층 5동, 지상4층 2동	지상1층 8동(5m)	지상5층(14.8m), 1동	지상4층(12.5m), 1동
대지면적	4,443㎡	4,331㎡	462.0㎡	462㎡
건축면적	1,678.48㎡	737.6㎡	180.53㎡	180.53㎡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1.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흥덕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m 이격된 곳에 기존에 다세대주택(4~5층, '14년 2월) 또는 단독주택(1층, '15년 2월)으로 허가된 사항을, 소유자 변경 및 분필 후 다세대주택(5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6.9.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운동 866번지 등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1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2-33, 340-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14.2월)	기 허가('15.2월)	1차('16.9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
신축내용	다세대주택(7동)	단독주택(8동)	다세대주택(1동)	다세대주택(1동)
건축규모	지상5층 5동, 지상4층 2동	지상1층 8동(5m)	지상5층(14.8m), 1동	지상5층(14.8m), 1동
대지면적	4,443㎡	4,331㎡	363.0㎡	363㎡
건축면적	5,011.11㎡	737.6㎡	180.53㎡	180.53㎡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2.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흥덕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m 이격된 곳에 기존에 다세대주택(4~5층, '14년 2월) 또는 단독주택(1층, '15년 2월)으로 허가된 사항을, 소유자 변경 및 분필 후 다세대주택(4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6.9.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운동 866번지 등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3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2-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14.2월)	기 허가('15.2월)	1차('16.9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
신축내용	다세대주택(7동)	단독주택(8동)	다세대주택(3동)	다세대주택(3동)
건축규모	지상5층 5동, 지상4층 2동	지상1층 8동(5m)	지상5층(14.8m), 3동	지상4층(12.5m), 3동
대지면적	4,443㎡	4,331㎡	879.0㎡	879㎡
건축면적	5,011.11㎡	737.6㎡	449.57㎡	449.57㎡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3.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흥덕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m 이격된 곳에 기존에 다세대주택(4~5층, '14년 2월) 또는 단독주택(1층, '15년 2월)으로 허가된 사항을, 소유자 변경 및 분필 후 다세대주택(4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6.9.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운동 866번지 등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3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2-31, 336-9, 340(문화재구역에서 약 9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14.2월)	기 허가('15.2월)	1차('16.9월) / 부결	2차('16.11월) / 금회
신축내용	다세대주택(7동)	단독주택(8동)	다세대주택(3동)	다세대주택(3동)
건축규모	지상5층 5동, 지상4층 2동	지상1층 8동(5m)	지상5층(14.8m), 3동	지상4층(12.5m), 3동
대지면적	4,443㎡	4,331㎡	1,071.0㎡	1,071.0㎡
건축면적	5,011.11㎡	737.6㎡	554.94㎡	554.94㎡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4. 청주 흥덕사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흥덕사지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90m 이격된 곳에 기존에 다세대주택(4~5층, '14년 2월) 또는 단독주택(1층, '15년 2월)으로 허가된 사항을, 소유자 변경 및 분필 후 다세대주택(5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운동 866번지 등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2동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2-3, 336-8(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14.2월)	기 허가('15.2월)	금회신청/('16.11월)
신축내용	다세대주택(7동)	단독주택(8동)	다세대주택(2동)
건축규모	지상5층 5동, 지상4층 2동	지상1층 8동(5m)	지상5층(14.8m), 2동
대지면적	4,443㎡	4,331㎡	725㎡
건축면적	5,011.11㎡	737.6㎡	375.86㎡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5.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16.03.09.) 사적분과위원회 및 제4차('16.05.25.), 제6차('16.07.27.), 제8차('16.09.28.) 사적분과 소위원회에서 부결(역사문화 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346, 347, 348, 370-7, 371, 655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건축규모

구분	1차신청 (‘16.3월)	2차신청 (‘16.5월)	3차신청 (‘16.7월)	4차신청 (‘16.9월)	금회신청
대지면적	1,19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연면적 /건축면적	2,266.59㎡ /572.97㎡	2,339.99㎡ /572.97㎡	좌동/좌동	1,648.85㎡/좌동	좌동/좌동
높이/규모	23.3m/지상6층	20.3m/지상5층	17.4m/지하1층, 지상4층	14.7m/지상4층	13m/지상4층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위원 ○○○, ○○○)

- 사업대상지는 서벽에 근접한 지역임으로 현재 제출된 건축계획은 문화재의 주변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6.09.20/문화재전문위원 ○○○)

- 성벽으로의 조망성을 고려할 때,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높이 조정을 통한 조망성 확보방안 검토 바람직함
- 또한, 대지에 넓게 펼쳐진 평면형태로 인해 조성시 매스의 위압감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높이의 하향조정 및 매스의 분절을 통한 위압감 방지 대책 마련이 추가로 요구됨

(3) 현지조사의견('16.07.20/문화재위원 ○○○, ○○○)

- 성벽으로 4선이 개방되는 지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문화재 경관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건물 높이 과다

3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50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건축규모
 - 대지면적 : 105.00m²
 - 연면적/건축면적 : 179.55m²/54.80m²
 - 높이/규모 : 10.10m(지하포함 13.15m)/지하1층, 지상3층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위원 ○○○, ○○○)
 - 사업신청 구역은 동벽에 인접되어 있으며, 동벽과 사업신청구역사이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빈공간임
 - 따라서 제출된 사업계획은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건물 높이 과다

37.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내 가설 건축물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삼척시 소재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 삼척시 소재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사적 제421호 / 2000.09.16.)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내미로리)
- (3) 신청내용<가설 건축물 설치>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314-6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8㎡/18㎡
 - 용도 : 임시창고
 - 구조물 및 높이 : 컨테이너(3m×6m)/2.6m
 - 외부마감 : 방부목(흑갈색)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0.31/문화재전문위원 ○○○, ○○○)
 - 사적지 경내 진입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입목적에 비추어 기존 시설의 활용이 이상적 대안이라 하겠으나, 부득이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경내 진입동선 및 시야에서 이격된 위치를 검토하는 한편, 현 검토 위치의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38.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에 템플스테이 (외국인 전용) 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에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 2008.12.18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전전리 55)
- (3) 신청내용<템플스테이(외국인 전용) 체험관 신축>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전리 54-10번지(문화재구역으로1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높이/규모 : 정면 11.06m, 배면 7.50m/지하 1층, 지상 1층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939㎡/103.94㎡/255.72㎡
 - 면적 : 지하층 165.29㎡/지상층 101.43㎡
 - 주칸 : 정면 5칸, 측면 3칸
 - 가구 : 1고주 5량가
 - 양식/처마/지붕/단청 : 몰익공/겹처마/팔작지붕/모로단청
- (4) 신청인 의견
 - 현재 낙산사는 내국인 단체와 외국인 단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부족하여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만 운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한국불교와 한국사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1/문화재전문위원 ○○○, ○○○)

- 도입시설의 기능은 사용목적에 비추어 양호하다 판단되나, 입지가 지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도를 고려할 때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절·성토 행위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가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바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형 훼손 최소화, 전문가 자문 필요

39. 경주 낭산 일원 주변 배반네거리 국도7호선(포항방향) 우회차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주변 배반네거리 국도7호선(포항방향) 우회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낭산 일원 주변 배반네거리 국도7호선(포항방향) 우회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03.23(2차 소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05.25(4차 소위원회) 보류 : 노선 계획 변경
 - '16.10.26(11차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
- (3) 신청내용<국도 우회도로 확장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718-4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1구역, 유물 비산포지)
 - 사업내용

구분	당초	1차(부결, '16.3월)	2차(보류, 16.5월)	금차
도로규격	폭 20m	차도 4.35m, 인도 3m(확장폭), 길이 900m	차도 4.35m~7.6m, 인도 3m (확장폭), 길이 520m	차도 7.35m~24.75m, 길이 900m

- 우회도로 확장 : L=990m, B=7.35~24.75m
 - 토 공 : 흙깎기 2,490m³, 흙쌓기 2,310m³, 터파기 1,020m³, 되메우기 860m³
 - 배수 공 : L형측구 L=1,461m, 배수관(D400~D1200) L=1,550m,

우수받이 N=75개소,

각형3호맨홀 N=3개소, 각형2호맨홀 N=6개소

-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 A=11,485㎡, 보도포장 A=5,152㎡,
보차도경계석 N=1,499개, 도로경계석 N=1,461개
- 부 대 공 : 1 식
- 조 경 공 : 1 식

(4) 신청인 의견

- 울산~포항간 산업물동량 일평균 30,000대와 경주IC~보문간 관광 교통량 48,000대가 대다수 배반네거리를 통과함으로써 상습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배반네거리에서 경주시청, 보문단지방향(산업로)으로 진입하는 우회차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그 목적이 있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낭산 일원 주변 20m 이격된 곳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천왕사지에서 이격된 곳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사천왕사지 측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현재 도로의 폭이 좁아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확장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0.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26(11차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및 내남면 용장리 등
- (3) 신청내용<동남산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1008-3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은행나무 산책로 조성(L=410m), 노거수 주변정비(A=190㎡), 우물정비(A=50㎡), 꽃길 조성(L=230m), 양피저수지 정비(L=184m)
- (4) 신청인 의견
 - 남산동 일원에 탐방로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안내시설을 도입하여 동남산 일대를 관광자원화하여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남산 일원에서 20m 이격된 마을 내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도를 조성하고, 노거수 주변 박석 포장, 우물 정비, 저수지 주변의 관람로를 정비하는 등 시설물의 설치가 없고, 역사문화환경 내 마을의 내부를 단정히 정비하게 되어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됨.
- 단, 우물지는 기존의 범위 내에서 인위적인 것을 지양하고, 노거수 주변 박석은 질척거림을 방지하는 정도로 정비되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1.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06.22(5차 소위원회)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26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당초('16.6월)	변경	비고
연면적	119.34㎡	141.48㎡(증 22.14㎡)	
구조 등	목구조, 한식골기와잇기	목구조, 한식골기와잇기	
최고높이	지상1층 6.3m	지상1층 6.3m	

(4) 신청인 의견

- 2016.6.27자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필지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2. 경주 천관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관사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26(11차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244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 145, 14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8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점토기와잇기)
 - 최고높이 : 6.9m
- (4) 신청인 의견
 - 주거환경 개선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천관사지에서 북측으로 75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건축면적 99.84㎡, 1층, 높이 6.9m의 한옥형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구역으로 건축이 허용된 마을 내에 위치하며, 한옥으로 조성되어 역사문화환경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단, 사지와 관련하여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굴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2-043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 권역에 속하는 2필지 252m²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35필지 386,165.3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52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1,337필지 386,417.3m²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II 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0.07)
 - II 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27	대	150	150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64	대	102	102		
합계				252	252		

2.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선화당(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82.3.4. 지정)
- 징청각(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82.3.4. 지정)
-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 '03.4.30. 지정)
- 관풍루(문화재자료 3호, '82.3.4. 지정 / 현재 달성공원 내 위치)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3) 지정신청 명칭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m²

(5) 관리단체(안) : 대구광역시 중구

(6) 신청사유

- 1601년(선조 34)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유일하게 조선시대 감영원형지를 보존하고 있고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과 구한말 격변기 관아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라. 현지조사의견('16.10.25/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 등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 조사에 의해 부속 건물지가 일부 유적으로 잔존하는 상황으로,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구는 고대부터 달성(사적 제62호)을 중심으로 달구벌국을 형성하였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 경상감영이 있는 위치로 고을의 중심이 이동되어 현재까지 대구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상감영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1번지) 일원의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전동, 포정동, 서문로1가, 대안동, 북내동, 서내동의 6개동에 걸쳐 자리하고 있음.

○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는 태종 13년 도역이 개편된 이래 한말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경상감영은 개국 초 경주에 있다가 세종 조초부터 상주로 옮겨 임진왜란 때까지 존속되었음.

○ 임진왜란 이후 대구로 감영처를 옮겨 경상도의 71개 고을을 다스렸음. 세종 원년에 대구현이 군으로 승격하였고, 세조 12년(1466) 대구군이 도호부로 승격되었음.

○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60년대까지 경상북도청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경상감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연혁·유래 및 특징

○ 조선은 태종 13년(1413)에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어 감사를 두고, 그 밑에 유수부,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설치하였음. 조선 개국 초에서 태종 7년(1407)까지는 경주에 경상감영이 있었으나, 8도제가 확립되고 경상감사의 직무를 상주목사가 겸하면서, 상주는 경상감사가 머무는 행영이 되었음.

○ 태종 8년(1408) 8월부터 14년 7월까지 6년 간 이원·안순·한용 등이 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였고, 세종 30년(1448)부터 단종 2년(1454) 8월까지 6년 간은 민공·이인손·이송지·김순 등이 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였음. 태종 8년 이후 상주가 경상감사의 본영이었으나, 선조 26년(1593)에

성주(星州) 속현 팔거현(八莒縣)으로 감영이 이동하였다가 선조 29년(1596)에 대구 달성(達城)으로 옮겼고, 다시 선조 32년(1599)에 안동(安東)으로 이동하였다가, 선조 34년(1601)에 체찰사 이덕형의 노력으로 대구부(大丘府)에 정착함.

- 경상도는 태종 7년(1407), 중종 14년(1519), 그리고 선조대(1568~1608)에 몇 차례 좌·우도로 나뉘었으며, 이때도 좌도감사는 경주부윤이 겸하였지만, 우도감사는 상주목사가 겸하였음. 이처럼 약간씩의 변동은 있었지만, 상주는 태종 8년부터 선조 34년까지 경상감사가 머무는 중요한 지역이었음. 그러나 당시 감영의 기능은 감사가 1년 동안 도내 제읍을 순력해야 하므로, 도정을 종합하는 중심지 또는 관찰사 순력 시 일시 휴식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음.
-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는 상주가 8도제 하의 경상감사의 행영으로 본영이었기 때문에 경상도의 중심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선조 34년 경상감영이 대구부에 설치되면서 상주는 8목의 하나로서의 위상만 가지게 되고, 새로 감영이 설치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음.

< 경상감영 연보 >

연 도	내 용
1601년(선조34)	대구 경상감영 설치[지금의 포정동 현 위치]
1670년(현종11)	경상감영 1차 화재[영리청 화재로 문서 전소]
1730년(영조 6)	경상감영 2차 화재[관찰사 조현명 부임기간 중 화재발생 및 중건]
1736년(영조12)	대구읍성 축조[경상감사 민응수의 건의]
1806년(순조6)	경상감영 3차 화재[184칸 전소]
1807년(순조7)	경상감영 재건[현 선화당, 징청각]
1870년(고종7)	대구읍성 대중수 및 공해 각처 256칸 보수
1895년(고종32)	1895년 지방관제 개혁으로 대구군으로 개편 1896.7 경상북도 관찰부로 전환
1897년(고종34)	경상감영의 중영이던 제승당을 최초의 대구경찰청사로 사용
1906년(고종43)	경상감영 외영리청 터에 대구우체국 신축(6월)
1906년(고종43)	경상감영의 선화당에 대구이사청 설치
1907년(고종43)	대구읍성 철거 [1906~1907]
1908년(순종 2)	객사 철거 대구경찰서 신축 이전[1908.10 현 중부경찰서 자리]
1909년	대구이사청 선화당에서 이전 대구읍성 내 십자도로 개설[개수공사 1910.5~1912.5]
1910년	경상감영 선화당 및 내영리청에 헌병대 본부 및 헌병분대, 분건소 설치[6월]

연 도	내 용
1918년	현 종로초 부지(구.대구부아)에 대구본정공립심상소학교 개교[1918.4.1]
1920년	관풍루 이축
1920년대 이후	선화당은 경상북도 산림과, 징청각은 농무과로 이용됨
1966년	경상북도청 이전(1966.4.1 현 산격동 도청부지로 이전)
1970년	중앙공원(현 경상감영공원)개원[1970.10.26]
1972년	선화당, 징청각 문화재 지정(1972.12.29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지정) → 1982.3.4 대구시유형문화재 지정
1997년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 변경(97.10.13 준공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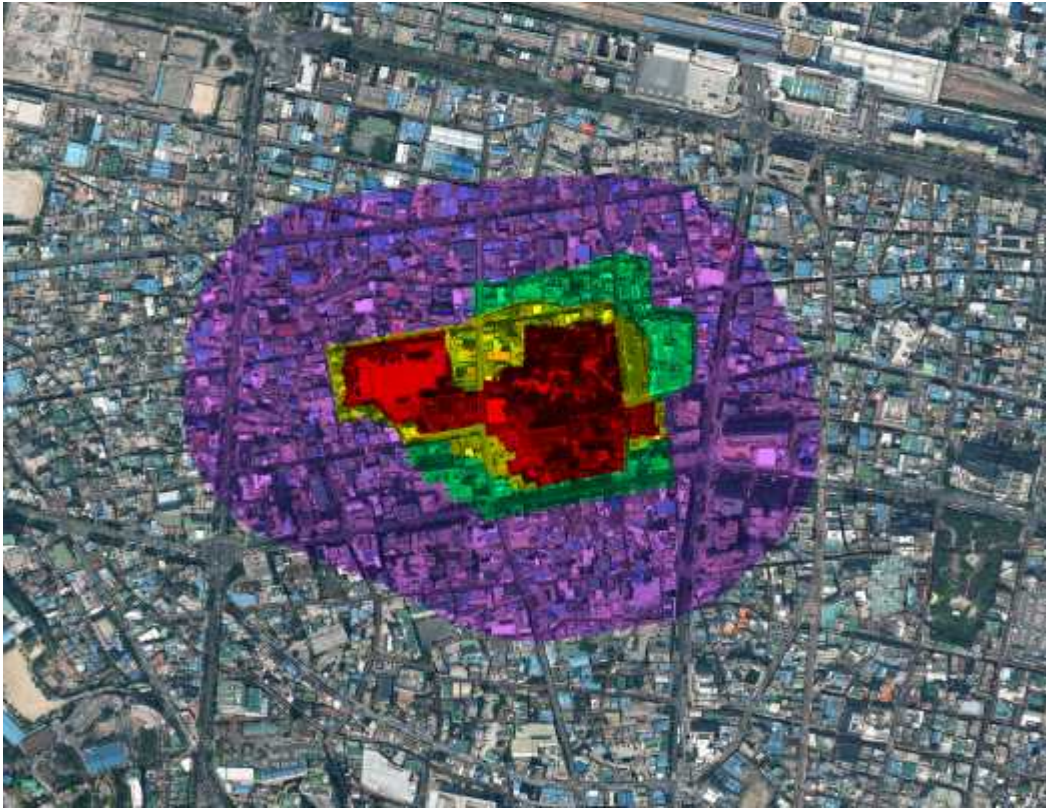
※ 현재 경상감영과 관련되는 건물 중, 선화당(시유형문화재 제1호, 1982.3.4 (도지정 1972.12.29), 징청각(시유형문화재 제2호, 1982.3.4(도지정 1972.12.29)이 있으며, 관풍루(문화재자료 제3호, 1982.03.04)는 대구 달성으로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 건되었음.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대구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 수원, 광주, 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조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있음.
- 또한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음.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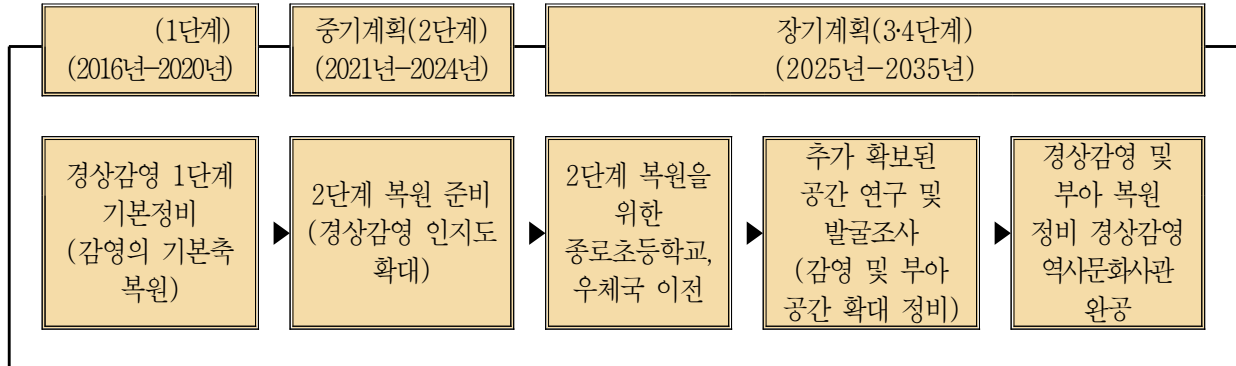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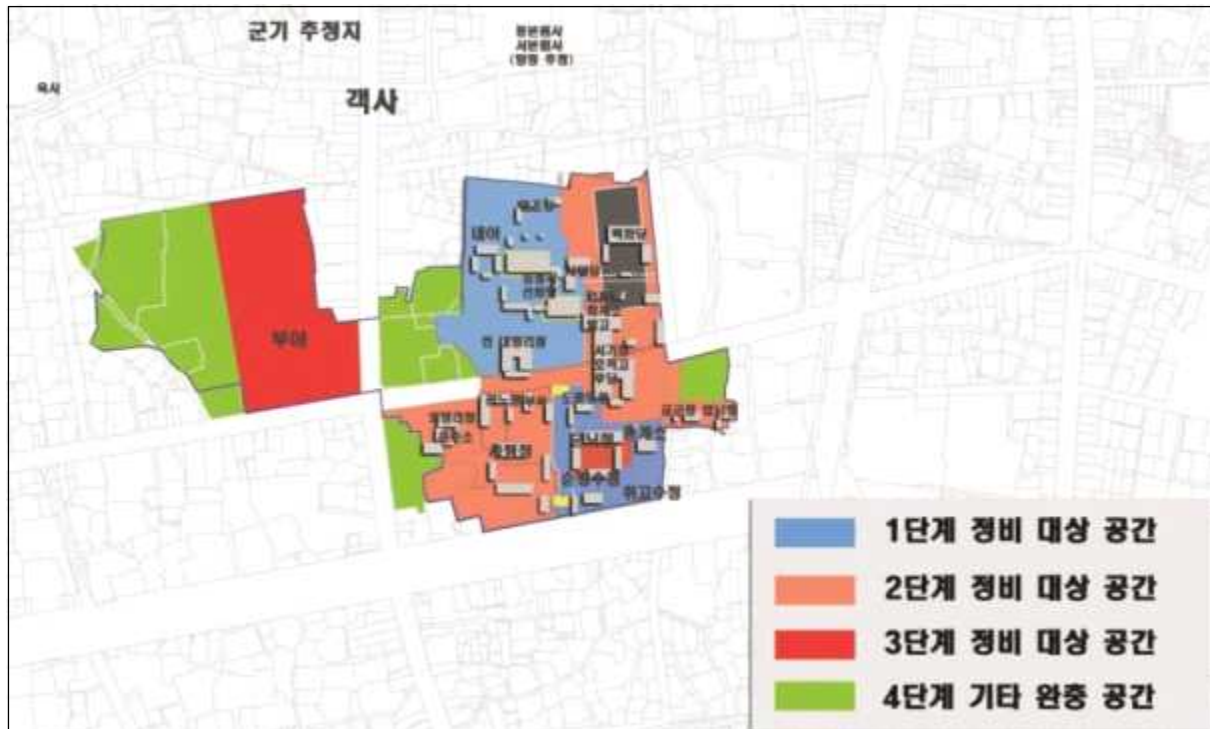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9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회색, 밤색 등/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7)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복원·정비의 단계별 계획



<단계별 복원 정비 대상 공간>



(8) 종합 의견

- 대구는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 수원, 광주, 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원래의 관아 문인 관풍루가 달성에 이전 복원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시(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의 건물 외에도 감영 부속 건물지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동	1	대	588.4	588.4		
2	전동	2-1	대	3.3	3.3		
3	전동	2-2	대	33.1	33.1		
4	전동	20-1	대	179.2	179.2		
5	전동	21-1	대	366.6	366.6		
6	전동	22	대	201.7	201.7		
7	전동	23-1	대	196.0	196.0		
8	전동	23-2	대	2,450.3	2,450.3		
9	전동	24-2	대	79.3	79.3		
10	전동	24-6	대	103.1	103.1		
11	전동	27-1	대	136.2	136.2		
12	전동	27-4	대	18.2	18.2		
13	포정동	21	공	13,814.2	13,814.2		
14	포정동	26-6	대	3.3	3.3		
15	포정동	26-17	대	15.9	15.9		
16	포정동	30-1	대	156.4	156.4		
17	포정동	31-6	대	412.6	412.6		
18	포정동	33	대	1,279.3	1,279.3		
19	포정동	33-1	대	16.5	16.5		
20	포정동	34	대	1,421.0	1,421.0		
21	포정동	35	대	2,845.4	2,845.4		
22	포정동	38	대	878.9	878.9		

23	포정동	40	대	1,049.3	1,049.3		
24	포정동	40-1	대	633.8	633.8		
25	포정동	51-1	대	224.8	224.8		
26	포정동	51-3	대	33.1	33.1		
27	포정동	51-4	대	79.3	79.3		
28	포정동	51-5	대	86.0	86.0		
29	포정동	52	대	33.1	33.1		
30	포정동	52-1	대	9.9	9.9		
31	포정동	52-2	대	36.4	36.4		
32	포정동	52-3	대	89.3	89.3		
33	포정동	52-4	대	95.9	95.9		
34	포정동	52-5	대	133.2	133.2		
35	포정동	52-6	대	145.5	145.5		
36	포정동	52-7	대	9.9	9.9		
37	포정동	52-9	대	4.0	4.0		
38	포정동	52-10	대	26.8	26.8		
39	포정동	52-11	대	24.5	24.5		
40	포정동	54-3	대	851.5	851.5		
41	서문로 1가	1-1	대	79.3	79.3		
42	서문로 1가	1-2	대	29.8	29.8		
43	서문로 1가	1-3	대	13.2	13.2		
44	서문로 1가	1-4	대	3,471.1	3,471.1		
45	서문로 1가	1-5	학	8,482.6	8,482.6		
46	서문로 1가	1-9	대	6.6	6.6		
47	대안동	75	대	277.7	277.7		
48	대안동	75-1	대	7.0	7.0		
49	대안동	76	공	806.3	806.3		
50	대안동	76-2	대	89.3	89.3		
51	대안동	76-3	대	1.7	1.7		

52	대안동	76-4	공	58.2	58.2		
53	북내동	51-3	학	223.3	223.3		
54	서내동	62	학	2292.9	2292.9		
55	서내동	66	학	578.5	578.5		
56	서내동	71	학	366.9	366.9		
57	서문로 1가	84	도	4836.2	288.1		
58	포정동	87	도	7030.9	2,368.2		
59	전동	72-1	도	316.6	58.4		
60	서내동	72-39	도	114.2	114.2		
계				57847.5	48,378.5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관련사항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성문의 복원 형식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약보고서('13.3)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발굴유구 및 고문헌(1872년 고지도)을 바탕으로 정면은 홍예식 배면은 평거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그러나, 공사 추진간 개거식이라는 의견 제기가 있어 2차례 기술지도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6.3.9) 검토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분야별(사적, 건축 관계전문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16.4.5)한 후 문화재위원회('16.5.11)에 상정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음
- 승인 조건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후 문화재위원회('16.9.7) 상정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재검토('16.10.25)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재상정 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 (3) 신청내용
 - 나주읍성 북망문 성문 복원 형식 검토
 - 1안 : 홍예식 + 평거식
 - 2안 : 개거식

(4) 신청인 의견

- 발굴유구에서는 성문 형태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도출되지 않았음
- 제2차 소위원회('16.10.25) 결과에 따라 기존 설계(정면 홍예식, 배면 평거식)대로 복원을 하여도 역사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의결사항

- 부결
 - 북망문 복원은 명확한 고증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보류함

4. 경복궁 동측 외곽 출입문 설치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동측 외곽 출입문 설치 사업계획을 현지 조사를 거쳐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 경복궁의 업무용 차량은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이 휴관 없이 365일 개관함에 따라 박물관 정문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차량 출입문 설치사업 계획
- 본 건은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16.10.12) 심의 결과, 재검토로 보류된 것으로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검토 받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경복궁 동측 외곽 출입문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국립민속박물관 정문 남측)
 - 공사기간/공사비 : 2016년 9월~10월 / 약 60백만원
 - 공사내용
 - 출입문 신설 1조(폭 4.0m × 높이 2.4m/궁장 판문 형태)
 -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존 경상관리용 가설창고 부분 이설, 정비
 - 지장목 벌채 2주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등 1식

라. 참고사항

(1) 1차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16.10.05/전 문화재위원 ○○○)

- 출입문을 계획하는 정문 남측 담장은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설치시 조성한 돌담이므로 궁장의 원형훼손 우려는 없으나 주변 역사 경관을 고려한 형태의 출입문으로 설치할 것

(2) 2차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16.10.19/문화재위원 ○○○, ○○○)

- 현재 국립민속박물관과 경복궁관리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출입문은 관람객들이 매우 많아서 혼잡하며 경복궁 관련 업무차량(행사차량, 쓰레기 반출 차량, 복원공사 차량 등) 출입시 안전사고가 우려됨
- 따라서 현재의 출입문 인근(국립민속박물관 정문 근처)에 새 출입문 설치가 필요하며 계획 위치는 원래 궁장이 아니어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이 없는 곳임
- 신규 출입문 제작시 담장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할 것(1안이 무난함)
- 신설 출입문에는 차량의 출입문이라는 것을 관람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

(3) 국립민속박물관 의견('16.10.11/민속기획과)

- 10월부터 휴관 없는 박물관 개방에 따라 정문으로 차량 출입 시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2-047

1.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안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종합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1차 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등

(3) 보고내용<1차 종합정비계획안>

○ 목적 :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실제적인 유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조사 계획 수립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행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요지별 분류등급 설정
- 문화재(보호)구역 적절성 검토를 통한 조정방안 제시
- 분류등급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제시
- 향후 광주 조선백자 요지 보존·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 과업범위

- 광주 조선백자 요지 가운데 선행 시굴조사가 진행된 29개소(30건)※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총 78개소(25군)가 지정되어 있음.

○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안

등급	연 번	도요지명	총 점수	지목	소유	용도지역	기존 면적(㎡)	조정 후 면적(㎡)
상급 (90점~100점)	24	번천리 4호	보존·활용	사, 전, 도	국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2,463	2,463
	03	우신리 9호(북)	98.28	전	사유지	관리지역	2,073	2,073
	09	도마리 7호	100.00	임	국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5,354	5,354
	51	목현동 1호	98.60	임, 전	사유지, 국유지	관리지역	1,578	1,578
	06	우신리 14호	92.64	전	사유지	관리지역	3,278	3,278
	46	산동리 2호	97.68	목, 임	사유지	관리지역	20,163	20,163
	71	신대리 1213호	100.00	임, 전	사유지, 국유지	도시지역	14,828	14,828
중급 (74점~90점 미만)	26	번천리 8호	88.42	임, 전, 대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5,032	5,032
	62	근지암리 3호	89.48	임, 전	사유지	도시지역	4,502	969
	01	우산리 4호	89.12	전, 임	사유지	관리지역	2,716	2,716
	04	우신리 9호(남)	84.44	전	사유지	관리지역	2,073	1,815
	70	신대리 828호	88.32	임, 전	사유지	도시지역	4,789	733
	29	번천리 21호	76.20	임, 전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3,236	3,236
	16	관음리 16호	86.32	전, 대	사유지	관리지역	1,805	1,805
	37	무김리 1421호	87.52	임	사유지	농림지역	6,942	4,056
	65	유사리 5호	89.44	임	사유지	관리지역	8,296	2,897
	07	도마리 1호	86	전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2,400	1,958
	57	송정동 4호	84.32	임	사유지, 국유지	도시지역	3,377	1,746
하급 (74점 미만)	41	학동리 10호	68.40	전, 대	사유지	관리지역	3,055	3,055
	63	근지암리 6호	67.36	전	사유지	관리지역	1,750	581
	48	삼림리 1012호	65.04	전	사유지	관리지역	10,356	1,400
	60	열미리 5호(남)	54.04	전	사유지	관리지역	3,332	864
	59	열미리 5호(북)	69.08	전	사유지	관리지역	8,665	5,085
	31	오전리 3호	70.16	전, 답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3,974	-
	33	오전리 5호	65.04	임, 대, 전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3,009	3,009
문화재 없음	72	오항리 일원	20.00	전	사유지	관리지역	2,202	-
	64	유사리 3호	20.00	전, 대	사유지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2,257	-
	22	정지리 4호	20.00	전	사유지	관리지역	2,357	-
지정요류	25	번천리 5호	20.00	임	사유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1,674	1,674

라. 의결사항

○ 접수

2. 경복궁 동십자각 주변 정비공사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경복궁 동십자각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동십자각은 궁장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궁궐의 망루로서 동십자각 남측 화단 앞에 조성한 화강석 방어벽이 동십자각 전체 경관에 이질감을 주고 있어 화강석 방어벽을 철거하여 주변 경관을 회복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경복궁 동십자각 주변 정비공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문화재구역/경복궁 남동쪽 인접 도로)
 - 공사기간/공사비 : 2016년 11월 ~ 12월 / 18백만원
 - 공사내용
 - 방어벽 해체 : 11.32m
 - 경계석 설치 : 13.30m
 - 되메우기 : 10m³
 - 잔디식재 : 20m²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15.11.05/문화재전문위원 ○○○, ○○○)
 - 동십자각 남측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판석 재질의 화단은 문화재에 이질감을 주고 있어 철거하고, 주변의 삼면(동·서·북)과 같이 경계석을 두른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계석 앞 도로쪽으로는 완충공간 확보 필요

- 동십자각 주변에 심어 있는 무궁화 등은 벌채하고, 지상으로 노출된 조명등은 매입

마. 의결사항

- 접수

3. 창덕궁 수강재 구들 보수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수강재의 온돌방 2개소의 구들을 보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수강재의 온돌방 바닥이 고르게 가열되지 못하고 굴뚝을 통한 배연이 원활하지 못하여, 온돌방 2개소에 대하여 구들을 보수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 (3) 신청내용<창덕궁 수강재 구들 보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 공사내용
 - 수강재 온돌방 2개소 구들 보수 및 연도 확인
 - 공사기간/공사비 : 2016년 11월~12월 / 12백만원(기업후원)

라. 참고사항

- 문화재수리기능자(온돌공) 참여
- 작업과정, 해체현황 실측조사 등 상세보고서 작성

마. 의결사항

- 접수

4. 남양주 광릉 주차장 진입로 정비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내 주차장 진입로 정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광릉 첫 관문인 주차장 진입부가 협소한 곡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 차량의 진입시 출차방향으로 진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진입동선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진출입로 표시가 불분명하고, 주차관리 부스가 노후되어 경관을 저해하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광릉(사적 제19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 (3) 신청내용<광릉 주차장 진입로 정비>
 - 위치 : 문화재구역 내 진출입로
 - 사업내용
<전체계획>
 - 사업기간 : 10일간
 - 사업비 : 26,000천원
 - 사업내용
 - 경계휀스 철거 및 재설치 : 12경관(24m)
 - 노후주차 관리부스 철거 및 신설 : 1식
 - 진입로 일부 구간 바닥 보강 : 20.6㎡(강화 블록 포장)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남양주 광릉의 협소한 주차장 입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곡선반경이 협소하여 대형버스가 원활이 다니지 못함.
- 주차관리 부스, 웬스 일부 정비하여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2)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6년 11월 : 광릉 주차장 진입로 정비사업 착·준공

마. 의결사항

- 접수

5. 남양주 홍릉과 유릉 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 정비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 정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가 봉분 배면방향으로 형성되어 능체에 맞게 봉분 아래쪽으로 지형 훼손 없이 관리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 (3) 신청내용<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 정비>
 - 위치 : 문화재구역 내 광화당 묘역주변
 - 사업내용
<전체계획>
 - 사업기간 : 7일간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내용
 - 면적 696m²(길이 387m, 폭 1.8m)
 - 절·성토 139m³(깊이 0.2m 이내로 지반정비)
 - 뚝수로 40m²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남양주 흥릉과 유릉 광화당 주변 관리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의 관리도로가 봉분 위쪽으로 형성되어 봉분 아래쪽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봉분 배면쪽으로 드나드는 것은 능제에 맞지 않음.
- 봉분 아래쪽으로 지형을 따라 큰 훼손 없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봄.

(2)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6년 11월 : 광화당 묘역 주변 관리도로 정비사업 착·준공

마. 의결사항

- 접수

6.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화장실 정비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화장실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화장실은 노후(90년대 말 건립), 협소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람객 불편이 가중되는 바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39
- (3) 신청내용<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화장실 정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39(문화재구역)
 - 신청내용

구분	기존	당초계획(8.10)	변경계획(11.9)	비고	
바닥면적	23.87㎡	194.98㎡	152.28	-42.7㎡	
변기갯수	남	대변기 2, 소변기 2	대변기2, 소변기3 (43.68㎡)	대변기2, 소변기3 (43.68㎡)	
	녀	대변기 3	대변기6 (48.96㎡)	대변기6 (48.96㎡)	
	장애인	-	남자 1칸, 여자 1칸	남자 1칸, 여자 1칸	
편의시설	없음	모유수유실6.4㎡, 창고 및 대기실 10.08㎡, 전시월 1개소, 대기공간 85.86㎡	모유수유실6.4㎡, 창고 및 대기실 13.22㎡, 전시월 1개소, 대기공간 40㎡	편의시설 -42.7㎡	
사적분과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4.28/문화재전문위원 ○○○)

- 신규 화장실 설치 위치는 용릉 능침에서 조망되지 않고 금천교 이남 서측 지역으로 위치함이 좋겠음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6.14/문화재위원 ○○○)

- 입지에 따른 향과 축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방풍실을 설치하여 동절기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동파방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를 확인할 것
- 방충망과 이중창을 설치할 것
- 환기와 채광을 고려한 평면으로 조정할 것
- 색상 사용을 절제하여 능의 경관과 어울리게 할 것

(3) 사적분과 검토결과('16.8.10) : 현지조사 후 재검토

(4) 현지조사의견('16.09.07/문화재위원 ○○○)

- 건축형식은 기존 안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남녀 화장실 중앙의 데크는 두 동을 연결하는 낮은 지붕을 설치함이 타당함
- 휴게실과 비품창고는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출입구 등의 설치를 고려할 것

마. 의결사항

- 접수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내 황룡사 역사문화관 개관식 개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8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	<p><황룡사 역사문화관 개관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3번지 외 210(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황룡사 역사문화관 앞 광장 · 무대설치 : 40평(15M*10M, 합판, 높이 0.6M)(중량 3000kg) · 영상설비 : LED 200인치(3M*4M) 1식 (중량 1,000kg) · 음향시설 설치 : 앰프, 무선마이크, 스피커 1식 (중량 2,000kg) · 텐트(10동), 플라스틱 의자(500개), 테이블 비치 (중량 500kg) ※ 관객석 및 무대 바닥 보호 매트 설치 	허가	'16.11.07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p><병영생활관 존치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4번지 34호 ○ 존치기간 연장 : 2017.1.1~2018.12.31 	허가	'16.10.3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다세대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9-4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32.00㎡ - 건축면적 : 76.72㎡ - 연 면 적 : 246.64㎡ - 규 모 : 지상5층(14.2m) - 용 도 :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조건부 허가	'16.10.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임시주차장 조성>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3번지 10호(문화재구역) ○ 면적 : 1,178㎡ ○ 허가기간 : '16.11.04 ~ '17.06.30	허가	'16.11.04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경북 고령군	○○○	<가야금전수교육장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캐빈리 16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연면적 220㎡, 높이 4.5m, 경량철골조	허가	'16.10.21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수목 벌채 및 조립>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31(문화재구역과 연결) ○ 내용 - 사업면적 : 1.23ha	허가	'16.10.31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수목 벌채 및 숲가꾸기>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1 및 계율리 산9(문화재구역과 연결 및 155m 이격) ○ 내용 - 수목 벌채 : 1ha - 숲가꾸기 : 3.42ha	허가	'16.10.31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전북 부안군	○○○	<수산물 가공시설 증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11-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내용 - 당초 건물높이 : 5.35m - 변경 건물높이 : 5.95m	허가	'16.11.01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	<도시가스 배관>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옥정동 987-5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개요 - 길이 : 2,528m - 굴착고 : 1.0~1.2m - 굴착폭 : 0.8~0.9m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 전문가 입회 조사 실시 ○ 허가기간 : 2016.10.18.~2017.10.17.	조건부 허가	'16.10.1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서울시 종로구	○○○	<p><인성, 예절 교육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6.10.17.(월)~10.31.(월), 기간 중 2회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서울 문묘와 성균관 일대 ○ 내용 : 동재, 서재, 향관청 등에서 전통예절과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교육 	허가	'16.10.16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서울시 종로구	○○○	<p><전국사자소학 암송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제10회 전국사자소학 암송전 결선 개최 ○ 일자 : 2016.11.5.(토) 12:30~17: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서울 문묘와 성균관 일대 ○ 내용 : 명륜당 앞마당 행사 개최, 천막(3개)·의자 등 임시 시설물 설치 	허가	'16.10.31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	<p><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9번지 3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83.00m² - 건축면적 : (당초)96.51m² (변경)94.11m² - 연면적 : (당초)105.51m² (변경)122.46m² · 규모 : 지상2층(7.96m) · 용도 : 농가용 단독주택 	허가	'16.10.28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	<p><다세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497-56(3-1구역:경사12m)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321.07m² (1.75m² 감소) - 연면적 : 949.27m² (84.85m² 감소)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2개동 / 철근콘크리트 / 경사지붕 - 최고높이 : 13.8m (0.1m 감소) 	허가	'16.10.17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2, 58-39, 당주동 128-59, 128-6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92.6m² - 건축면적 : 479.5m² - 연 면 적 : 2,812.7m² - 규 모 : 지하3층, 지상5층(19.2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조건부 허가	'16.10.2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8-34(문화재구역으로부터 83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24㎡ - 건축면적/연면적 : 97.74㎡/143.64㎡ - 층수/높이 : 지상2층/7.5m ○ 허가기간 : 2016.10.14.~2018.10.13. 	허가	'16.10.1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8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수 증가 : (당초) 1동, (변경) 2동 · 건축면적 변경 : (당초) 429.60㎡, (변경) 818.00㎡ · 연면적 변경 : (당초) 420.00㎡, (변경) 798.00㎡ - 높이 축소 : (당초) 9.5m, (변경) 8.0m ○ 허가기간 : 2016.10.14.~2017.10.31. 	허가	'16.10.1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다세대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10-22 ○ 사업내용 ○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변경 : 당초 109.63㎡, 변경 111.58㎡ - 연면적 변경 : 당초 336.68㎡, 변경 385.84㎡ ○ 허가기간 : 2016.5.27.~2017.12.31. ○ 허가조건 :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은 별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조건부 허가	'16.10.18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	<p><다가구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15-18(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116.34㎡/311.36㎡ · 규모 :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 / 최고높이 : 11.3M - B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107.36㎡/277.80㎡ · 규모 : 지상3층 / 철근콘크리트 / 최고높이 : 11.3M 	허가	'16.10.31

다. 의결사항

- 접수